

CONTENTS

I. 사업개요	1
II. 종자 생산·공급 계획	5
III. 세부 사업 추진체계	13
1. 종자생산단계별 생산·공급 체계	15
2. 종자생산단계별 생산·공급량 결정	15
3. 종자 생산 및 검사	17
4. 종자생산단계별 지역단위 합동진단	18
5. 종자(보급종) 수매 및 가격결정	19
6. 종자 신청·공급	20
7. 상위단계 종자보관 및 품질검정	21
8. 원원종 및 원종 활용	21
9.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비 운영	22
10. 행정사항	22
IV. 종자 공급계획	23
1. 작물별 공급계획(총괄)	25
2. 도별 공급계획	26
3. 작물별 공급계획	35
4. 부족종자 사용계획	68
5. 벼·콩 보급종 통합 채종계획	70
V. 단계별 사업담당 및 종자생산 기준	71
VI. 작물별 세부 추진요령	75
VII. 작물별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요령	93
VIII. 보고사항	99

I

사 업 개 요

□ 목 적

-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종자 생산·공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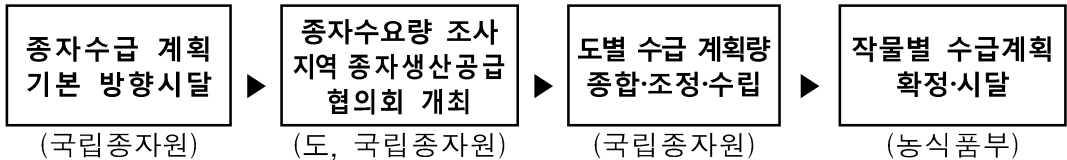
*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특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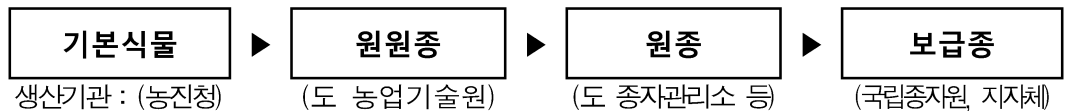
□ 대상작물

- 원원종(9작물) : 벼, 콩, 감자,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 원 종(10작물) : 벼, 콩, 옥수수, 감자,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 보급종(3작물) : 벼, 콩, 팥

□ 종자 수급계획 결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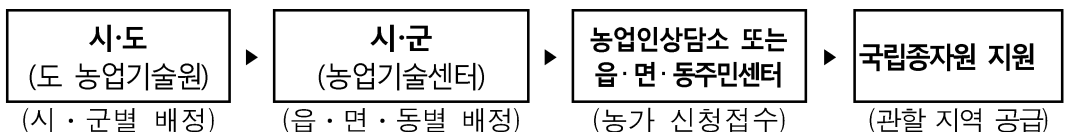


□ 채종단계별 종자 생산체계



* 종자갱신에 필요한 소요 종자는 일시에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종자를 증식하여 최종 단계인 보급종을 수요 농가에 공급

□ 보급종 신청·공급 절차(수확 후 농가신청 → 공급)



*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국립종자원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량 입력

II

종자 생산·공급 계획

II 종자 생산·공급 계획

1. 생산·공급계획량 : 원원종 79톤, 원종 1,263, 보급종 23,960

〈 종자 생산·공급 계획량(총괄) 〉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생 산 계 획 량	면 적	종자량	생 산 계 획 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 량
	a	kg	kg	a	kg	kg	ha	kg	톤
계	1,394.4	6,177.75	79,176.2	21,243	71,225.80	1,262,789	5,445.1	290,616	23,960
벼	367.0	55.06	5,505.0	7,904	3,714.00	355,715	4,388.4	228,817	22,450
콩	494.0	197.60	4,940.0	7,611	4,319.00	90,924	1,044.6	61,189	1,500
옥수수	-	-	-	250	50.00	1,250	-	-	-
감자	450.0	5,850.00	67,500.0	4,470	62,580.00	804,600	-	-	-
팥	26.0	7.90	158.0	245	96.00	1,685	12.1	610	10
녹두	14.0	2.10	70.0	75	11.00	375	-	-	-
고구마	6.0	45.00	780.0	40	262.50	5,200	-	-	-
참깨	14.3	0.72	28.5	340	16.75	1,005	-	-	-
들깨	5.1	0.17	13.7	149	4.55	445	-	-	-
땅콩	18.0	19.20	181.0	159	172.00	1,590	-	-	-

2. 채종 단계별 생산·공급 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 (벼) 농업인의 수요와 식량산업 정책방향을 고려, 다수확 품종 위주에서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공급방향 전환
 - '20년 보급종 공급량은 전년보다 250톤 증가한 22,450톤으로 하고, 다수확 품종은 공급 축소
 - 보급종 공급계획 : ('19년) 22,200 톤 → ('20) 22,450(전년대비 250톤 증)
 - * 다수확 품종(신동진 등 4품종) : ('19년) 전체공급량의 31% → ('20) 28%(6,340톤)
 - 수확기 품종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력 공급량(1,083톤) 확보
 - * 도별 공급계획량 중 일정물량은 품종을 정하지 않고 탄력 공급량 확보
 - 원원종·원종은 신규품종 수요 및 기상재해 등에 대비 적정 품종 생산
 - * 원원종 : 37품종 5.5톤(전년 33품종 3.9톤), 원종 : 30품종 355.7톤(전년 30품종 373.1톤)
- (콩) 밭 식량작물 수급정책 방향을 종자생산·공급계획에 반영
 - 논 타작물 재배확대 및 국산콩 자급률 향상 등 정책방향을 반영하나, 종자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보급종 공급량 소폭 축소
 - 보급종 공급계획 : ('19년) 1,610톤 → ('20) 1,500(전년대비 110톤 감)
 - 원원종·원종은 수요가 예상되는 품종 위주로 상위단계 종자 확보
 - * 원원종 : 17품종 5.0톤(전년 15품종 5.1톤), 원종 : 11품종 90.9톤(전년 12품종 92.8톤)
- (팥)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의 지속 추진, 국산팥 재배 고정수요에 따른 종자소요 등을 감안하여 보급종 생산·공급사업 계속 추진
 - 국산팥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논 작부체계 및 기계화 적성이 우수한 '아라리' 품종 공급
 - 보급종 공급계획 : ('19년) 5톤 → ('20) 10(전년대비 5톤 증)
- (감자) 원원종·원종은 전년도 수준에서 생산·공급
 - 원원종 67.5톤, 원종 804.6톤(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에서 생산 공급)
- (기타 녹두 등 6개 작물) 지역별 수요량의 원원종·원종 생산·공급

가. 원원종

- 신품종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품종을 생산
 - (벼) 신규육성된 우수품종의 신속한 종자생산·공급에 대비하여 국가 품종목록등재 신청 또는 심사 중인 품종을 포함하여 37품종 생산
 - (콩) 논 타작물 재배에 따른 논콩 재배에 대비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품종을 확대하는 등 농가의 다양한 선호에 대응하기 위해 17품종 생산

나. 원 종

- 도별 주력품종 등 보급종 생산에 필요한 종자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생산
 - (공통) 생산계획은 생산기준량을 적용, 생산 전량을 종자검사 실시 하여 보급종 생산에 활용
 - (벼) 보급종(22.5천톤) 공급을 위해서는 225톤의 원종이 필요하나, 쌀 정책방향, 농업인의 품종선호도 변화, 품종 추가수요 대비, 원종장의 생산포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요량의 1.6배 생산(356톤)
 - (콩) 보급종(1.5천톤) 공급을 위해서는 65톤의 원종이 필요하나, 밭작물 수급정책, 품종 추가수요 대비, 원종장의 생산포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요량의 1.4배 생산(91톤)

다. 보급종

- (벼) 전년보다 250톤 증가한 22,450톤을 공급하되, 다수확 품종은 쌀 적정생산 및 품질고급화 등을 위해 공급 축소
 -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 위주로 공급하나 종자수요가 저조한 품종은 공급 중단(수광),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으로 선정된 품종은 신규 생산·공급(해담쌀, 현품, 일미)
 - 공급계획 : ('19년) 22,200톤 → ('20) 22,450(전년대비 250톤 증)
 - 다수확 품종 : ('19년) 6,930톤(전체 공급량대비 31.2%) → ('20) 6,340(28.2%)
- * 다수확 품종은 기존 다수확 품종(새일미, 새누리, 운광) 및 신동진을 포함함

〈 도별·품종별 보급종 공급계획 〉

(단위 : 톤)

구 분	'20년 공급계획									'19년 공급계획		증 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 계 (A)	계획 (B)	조정 (C)	(A-B)	(A-C)
계(24품종)	2,610	1,210	1,060	4,070	3,620	4,310	3,360	2,210	22,450	22,200	21,698	250	752
대 안	255	55							310	280	223	30	87
동 진 찰				100	450	200		50	800	700	780	100	20
맛 드 림	115	20							135	100	100	35	35
미 품				150	100	110			360	750	808	△390	△448
백 옥 찰						120	100		220	150	185	70	35
삼 광	280	210	360	2,465			700		4,015	3,830	4,210	185	△195
새 누 리				80	100	20			200	555	570	△355	△370
새 일 미				340	50	1,250		700	2,340	2,400	2,380	△60	△40
신 동 진					2,360	1,240			3,600	3,600	3,837	-	△237
영 호 진 미						300		637	937	1,100	1,325	△163	△388
오 대	30	780	70						880	880	460	-	420
오 른		60							60	60	75	-	△15
운 광		30	10	25	20	35	30	50	200	375	380	△175	△180
일 품							1,970		1,970	1,950	1,910	20	60
조 평					20	20	30	30	100	440	203	△340	△103
추 청	1,400	45	500	150				200	2,295	2,385	2,412	△90	△117
친 들				610					610	400	510	210	100
하 이 아 미			90				50		140	100	125	40	15
해 품					160		50	91	301	510	565	△209	△264
화 선 찰	30								30	30	-	-	30
고 시 히 카 리	440								440	420	465	20	△25
일 미						770			770	-	-	770	770
해 담 쌀					180		130	242	552	-	-	552	552
현 품								102	102	-	-	102	102
수 광									0	100	115	△100	△115
영 우 (총 체)									0	50	60	△50	△60
탄 력 공급	60	10	30	150	180	245	300	108	1,083	1,035	-	48	1,083

- **(콩)** 논 타작물 재배확대, 국산콩 자급률 제고 등의 정책방향을 반영하나, 종자수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공급량 소폭 축소
 - 농기계 작업에 적합하고 농가 수요가 예상되는 품종은 공급 확대
 - * 선풍콩 : ('19) 30톤 → ('20) 100(70톤 증), 대찬콩 : ('19) 20톤 → ('20) 80(60톤 증)
 - 보급종 공급계획 : ('19년) 1,610톤 → ('20) 1,500(전년대비 110톤 감)

< 도별·품종별 보급종 공급계획 >

(단위 : 톤)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 0 품 종)		1,500	140	180	210	160	150	210	280	70	100
일 반 콩 (9)	소 계	1,300	140	180	210	160	140	120	280	70	
	대 원	957	133	130	210	140	20	50	240	34	
	대 풍	25		25							
	대 찬	80					20	20	40		
	선 유	20				20					
	선 풍	100					100				
	연 풍	7	7								
	태 광	73						50		23	
	진 풍	13								13	
	청 아	25		25							
나 물 콩 (1)	소 계	200					10	90			100
	풍산나물	200					10	90			100

- **(팥)**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의 지속 추진, 국산팥 재배 고정 수요에 따른 종자소요 등을 감안하여 보급종 생산·공급사업 계속 추진
 - 다양한 작부체계 및 기계화 적응성이 높아 수요가 예상되는 ‘아라리’ 품종으로 보급종 생산·공급(10톤)
- **(감자, 옥수수)** ‘12년부터 보급종 생산·공급계획은 제외하되, 원활한 보급종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원종·원종은 공급계획에 포함
 - (감 자) 전년도와 동일한 물량(원원종 67.5톤, 원종 804.6) 공급
 - (옥수수)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원종 공급(원종 1.3톤)

Ⅲ

세부 사업 추진체계

Ⅲ 세부 사업 추진체계

1. 종자생산단계별 생산·공급 체계

- 기본식물 : 벼, 콩, 옥수수, 감자,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등
- 품종육성기관에서 육성한 원래의 종자를 말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생산
- 원원종(9작물) : 벼, 콩, 감자,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 품종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로
각도 농업기술원 및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에서 생산
- 원종(10작물) : 벼, 콩, 옥수수, 감자,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각도 원종생산기관 및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생산
* 신속한 확대공급이 필요한 품종의 경우 국립종자원에서 상위단계종자 생산
- 보급종(3작물) : 벼, 콩, 팥
- 원원종 또는 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되는 종자를
말하며 국립종자원장 또는 지자체(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생산·
공급 담당
* 감자 보급종은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에서 자율적으로 생산·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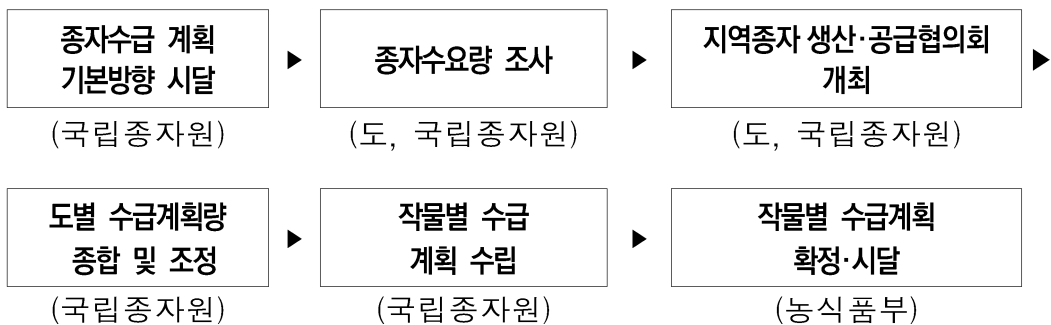
2. 종자생산단계별 생산·공급량 결정

가. 결정체계

- 지역종자생산·공급협의회에서 단계별 생산 품종 및 생산·공급량 협의
- 지역종자생산·공급협의회구성 : 국립종자원(지자체 공급기관 포함),
도 농업기술원(시·군 기술센터), 대량 종자수요처(브랜드경영체,
RPC, 전업농 등), 농진청(시험연구기관) 등

- 원원종·원종·보급종의 생산·공급 협의 : 국립종자원 또는
도 농업기술원(도별 여건에 따라 조정)
 - * 특·광역시 소요종자는 국립종자원 지원의 보급종 공급 관할 도에 포함
 - 지역종자생산·공급협의회 운영 : 2회(1~2월, 벼 수확기 이전)
 - 벼 품종별 선호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신규품종 특성 관찰
등을 위해 수확기 이전에 1회 추가 운영
- 도별 보급종 품종 및 물량 결정
- 지역종자생산·공급협의회 협의결과를 기준으로 품종별 재배면적,
농가 선호도, 작물별 원종생산량(확보량), 재해 및 병해충에 대한
안정성, 채종가능 면적, 정선능력, 과거 종자신청·공급량, 금후 공급
가능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결정

나. 종자 공급계획 수립 절차



다. 종자 생산·공급량 결정방향

- 원원종·원종
- 신품종 증식, 농업인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보급종 생산가능품종
중심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채종기준량에 준하여 목표량 책임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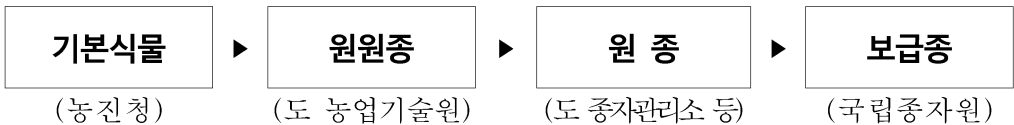
○ 보급종

- 정부 공공비축 매입 품종, 고품질 품종 등 농업인 선호품종을 중점 생산
- 공급계획량 달성을 위해 채종기준량, 품종별 감모율 등을 감안하여 보급종 생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계획 수립 추진
- * 채종기준량은 국립종자원 및 지자체 종자생산기관에서 자체 조정 가능

3. 종자 생산 및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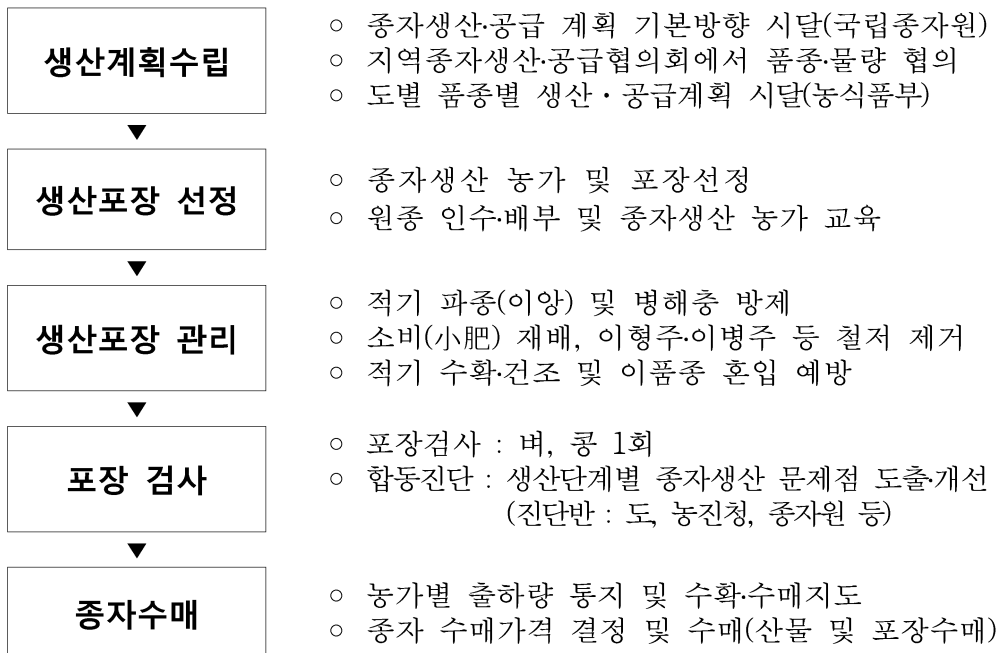
가. 종자생산 절차

○ 종자생산 단계



* 종자갱신에 필요한 소요종자는 일시에 대량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종자를 증식하여 최종단계인 보급종을 수요농가에 공급

○ 보급종 생산 절차



나. 종자생산 및 검사요령

○ 종자생산 관리기준

- 고품질 종자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종자생산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 준용
- 정부 보급종은 국립종자원 관련 예규에 따라 포장관리 및 고품질종자 수매 추진
- 자연재해 등으로 종자검사(수매검사)에 불합격하여 수매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원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정부 보급종 채종과정에서 상위단계 종자불량 또는 포장검사 합격 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발생 등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수매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매를 하지 아니하되, 생산장려금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참고

○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방법

- 관련규정 : 종자산업법 제28조(포장검사), 제30조(종자검사 등)
- 검사기준 : 종자관리요강에 규정된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기준』
- 검사방법 : 종자검사 요령(국립종자원 고시)
- 검사기관 : 국립종자원
- 검사대상 : 원원종·원종·보급종 및 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하는 품종목록등재대상 작물의 보급종(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4. 종자생산단계별 지역단위 합동진단

○ 추진목적

- 상위단계(원원종·원종) 종자의 품종별 재배 특성을 숙지하고 품종의 균일성 및 안정성, 생육상황, 이품종 발생, 병해충 저항성, 키다리병 등 특정병 발생 여부 등 사전 확인 점검

○ 합동진단 주관 : 농촌진흥청(품종 주요육성기관)

○ 진단반 : 품종육성자(기관), 단계별 생산기관(도, 종자원, 지자체) 등

○ 관찰시기 및 방법 : 작물별 생육 최성기

* 포장관찰 시기 및 방법 등은 해당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

5. 종자(보급종) 수매 및 가격결정

가. 수매계획량

- 작물별 보급종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 국립 종자원장(지자체 포함)이 결정한 물량

나. 수매·공급가격

(1) 수매·공급 가격결정 : 국립종자원장이 결정

(2) 수매가격 결정기준

- 벼(매벼 기준) : 당해년도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특등)에 생산 장려금 20%를 가산한 금액(기준가격)
 - * 찰벼 품종은 채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등가격에 생산장려금 25% 가산
- 콩·팥 : 수확기(10.10~12.10. 2개월) 양곡시장 유통가격(용도별 1등급), 시중 유통가격 또는 정부약정 수매 1등급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장려금(15~20% 수준) 가산

생산장려금 지급 사유

- ◇ 채종재배는 일반재배보다 모든 작업을 정밀하게 하며 이품종, 이형주, 잡초제거 등을 수차례 실시하고 병충해 방제횟수 2~3회 증가 등 철저한 포장관리로 인건비, 재료비 등 생산비 추가 소요
- ◇ 종자 충실도 향상을 위한 다수확 재배 지양, 혼종방지를 위한 새 포대 사용, 고품질종자 생산을 위한 정부 보급종 생산 참여 의욕 고취

(3) 공급가격 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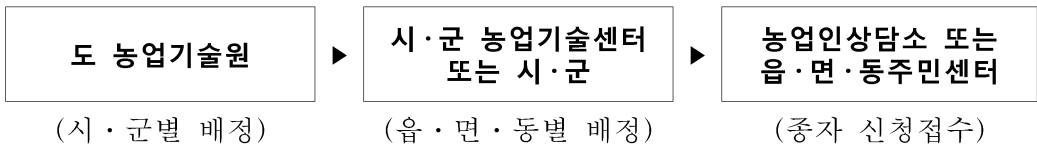
- (기본방향) 고품질 종자공급 위해 정선 및 종자소독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투입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 (벼) 종자생산 투입원가의 95% 수준으로 결정
 - (콩·팥) 종자생산 투입원가의 70% 수준으로 결정

6. 종자 신청·공급

가. 종자(보급종) 신청

- 신청 접수기관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
- 보급종 신청·공급 방법 :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국립종자원
예규)에 따라 추진

나. 종자신청·접수 절차



다. 종자(보급종) 공급

(1) 공급량 공고

- 공고기관 : 국립종자원 지원장, 지방자치단체 종자공급기관장
- 공고방법 : 시도별, 작물별, 품종별 공급계획량 범위 내에서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고

* 작물별 공고 시한 : 벼(우선신청·공급 11.1. 일반 11.20), 콩(1.31)

(2) 공급체계

- (주관기관) 해당도 생산·공급 원칙에 따라 국립종자원과 지자체
종자공급기관(경기, 제주)에서 해당 관할 지역에 생산·공급
- (공급방향) 벼 보급종은 우수 경영체 중심으로 우선공급 확대
 -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들녘경영체」, 「정부지원 RPC」,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이 위의 업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업체」에 정부 벼 보급종을 우선
신청 받아 공급

* 다만 RPC, 육묘장, 쌀 전업농 등 대량 수요처 공급량은 도 농업기술원, 관할
국립종자원(경기 포함)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조정

7. 상위단계 종자보관 및 품질검정

- 원원종, 원종은 보급종 생산이 완료될 때까지 품종별 종합시료를 채취하여 자체 보관·관리
 - 채종단계별 종자 시료 보관 기간 : 원원종 3년, 원종 2년
 - * 기본식물·원원종·원종은 필요 시 인수기관에서 순도에 대한 유전자(DNA)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5년)
- 국립종자원은 순도, 발아율, 건전도 등 품질 좋은 상위단계 종자 확보를 위해 자체 품질검정을 실시하고 생산기관과의 협력 강화
- 찰벼 등 특수 기능성 품종 등에 대해서는 적정 품질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차 하급 종자생산기관에 종자를 인도하여야 하며, 인수기관에서도 자체 품질검정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사전에 확인

8. 원원종 및 원종 활용

- 국고보조금으로 생산한 원원종·원종은 생산전량(불합격품 포함)을 차 하급 종자생산기관으로 무상 인계하고, 종자 수송은 수요기관에서 담당
 - 벼·콩은 원원종과 원종 사용 잔량까지 국립종자원(지자체 공급기관 포함)에서 관할 지역 물량을 일괄 인수하여 활용
 - * 단, 잔량이 10kg 이하 원원종은 시험연구 등 도 자체활용계획이 있을 경우 인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종단계별로 안정적인 종자확보를 위해 소요종자가 부족할 경우 반드시 순도검정 등 품질에 대해 사전 확인하여 재증식 활용
- 채종단계별 생산에 소요되는 물량 이외 잔량이 발생할 경우 향후 종자생산이 예상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저온비축하여 활용성 제고
- 지도기관의 품종비교 전시포는 최근에 육성된 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위주로 설치하여 농업인 등에게 비교·홍보

9.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비 운영

-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은 관련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교부, 집행, 점검, 정산 등 관련 업무 수행
 - (사업비 교부기관 : 국립종자원) 사업대상자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효율적인 상위단계 종자생산 관리 등을 위해 국립종자원 관할 지원은 필요시(병충해, 수발아 발생 등) 점검 가능
 - (사업대상자 : 도 기술원, 원종장)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집행 증빙자료 포함)를 교부기관에 제출

10. 행정사항

- '19년산 하계 주요작물 채종단계별 종자생산 실적보고 : '20. 1월 초
(각 채종기관 → 국립종자원 본원)
- '20년산 하계 주요작물 지역종자생산협의회 결과 보고 : '20. 2월 초
(국립종자원 지원, 경기도종자관리소, 제주 농산물원종장 → 국립종자원 본원)

IV

종자 공급계획

IV 종자 공급계획

1. 작물별 공급 계획 (총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 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 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 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1,394.4	6,177.75	79,176.2	21,243	71,225.80	1,262,789	5,445.1	290,616	23,960
벼	367.0	55.06	5,505.0	7,904	3,714.00	355,715	4,388.4	228,817	22,450
콩	494.0	197.60	4,940.0	7,611	4,319.00	90,924	1,044.6	61,189	1,500
옥수수				250	50.00	1,250			
감 자	450.0	5,850.00	67,500.0	4,470	62,580.00	804,600			
팔	26.0	7.90	158.0	245	96.00	1,685	12.1	610	10
녹 두	14.0	2.10	70.0	75	11.00	375			
고구마	6.0	45.00	780.0	40	262.50	5,200			
참 깨	14.3	0.72	28.5	340	16.75	1,005			
들 깨	5.1	0.17	13.7	149	4.55	445			
땅 콩	18.0	19.20	181.0	159	172.00	1,590			

※ 도별 보급종 생산면적, 종자량은 국립종자원 지원별 통합 채종계획을 감안하여 별도 표기하지 않음

2. 도별 공급계획

○ 경기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벼	66.00	22.54	744	1,556	643.0	43,194			2,750
콩	24.00	3.61	360	795.0	306.0	35,775			2,610
옥수수	30.00	12.00	300	556	261	6,264			140
감 자									
팥	4.00	1.20	24	50	18.0	320			
녹 두	1.00	0.15	5	35	5.0	175			
고구마									
참 깨	1.00	0.05	2	45	2.0	120			
들 깨	1.00	0.03	3	30	1.0	90			
땅 콩	5.00	5.50	50	45	50.0	450			

○ 강원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 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 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 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530.50	5,876.37	68,363.5	6,470	63,421.6	845,770			1,395
벼	20.00	3.00	300.0	600	240.0	27,000			1,210
콩	50.00	20.00	500.0	1,000	500.0	12,000			180
옥수수				250	50	1,250			
감 자	450.00	5,850.0	67,500.0	4,470	62,580.0	804,600			
팥	8.00	2.50	50.0	100	40.0	700			5
녹 두									
고구마									
참 깨	1.00	0.05	2.0	20	1.0	60			
들 깨	0.50	0.02	1.5	20	0.6	60			
땅 콩	1.00	0.80	10.0	10	10.0	100			

○ 충청북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47.3	16.31	513.7	1,187	652.7	25,175			1,270
벼	11.0	1.65	165.0	347	174.0	15,615			1,060
콩	33.0	13.20	330.0	770	462.0	9,240			210
옥수수									
감 자									
팥	1.0	0.30	6.0	10	4.0	70			
녹 두									
고구마									
참 깨	0.3	0.02	0.5	10	0.5	30			
들 깨	1.0	0.04	1.2	40	1.2	120			
땅 콩	1.0	1.10	11.0	10	11.0	100			

○ 충청남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103.0	29.20	1,270	2,077	1,119.0	67,100			4,230
벼	48.0	7.20	720	1,277	639.0	57,500			4,070
콩	55.0	22.00	550	800	480.0	9,600			160
옥수수									
감 자									
팥									
녹 두									
고구마									
참 깨									
들 깨									
땅 콩									

○ 전라북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158.0	61.56	2,068	2,555	1,394.7	78,920			3,775
벼	58.0	8.70	870	1,440	720.0	64,800			3,620
콩	90.0	36.00	900	1,035	616.0	12,420			150
옥수수									
감 자									
팥	3.0	0.90	18	30	12.0	210			5
녹 두									
고구마	2.0	15.00	260	10	37.5	1,300			
참 깨	2.0	0.10	4	15	0.75	45			
들 깨	2.0	0.06	6	15	0.45	45			
땅 콩	1.0	0.80	10	10	8.0	100			

○ 전라남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221.0	48.80	2,837	2,090	1,085.5	60,340			4,520
벼	143.0	21.45	2,145	1,080	540.0	48,600			4,310
콩	60.0	24.00	600	950	530.0	11,400			210
옥수수									
감 자									
팥	5.0	1.50	30	30	12.0	210			
녹 두	12.0	1.80	60	20	3.0	100			
고구마									
참 깨	1.0	0.05	2	10	0.5	30			
들 깨									
땅 콩									

○ 경상북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141.3	49.51	1,503	2,663	1,280.0	66,765			3,640
벼	33.0	4.95	495	1,130	476.0	50,850			3,360
콩	90.0	36.00	900	1,200	720.0	14,400			280
옥수수									
감 자									
팥	5.0	1.50	30	25	10.0	175			
녹 두	1.0	0.15	5	20	3.0	100			
고구마									
참 깨	6.0	0.30	12	200	10.0	600			
들 깨	0.3	0.01	1	34	1.0	100			
땅 콩	6.0	6.60	60	54	60.0	540			

○ 경상남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96.3	61.06	1,567	2,345	1,479.3	71,925			2,280
벼	30.0	4.50	450	1,235	619.0	55,575			2,210
콩	55.0	22.00	550	1,000	600.0	12,000			70
옥수수									
감 자									
팥									
녹 두									
고구마	4.0	30.0	520	30	225.0	3,900			
참 깨	3.0	0.15	6	40	2.0	120			
들 깨	0.3	0.01	1	10	0.3	30			
땅 콩	4.0	4.40	40	30	33.0	300			

○ 제주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 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31.0	12.4	310	300.0	150.0	3,600			100
벼									
콩	31.0	12.4	310	300.0	150.0	3,600			100
옥수수									
감 자									
팥									
녹 두									
고구마									
참 깨									
들 깨									
땅 콩									

3. 작물별 공급계획

가. 벼

○ 보급종 공급계획(도별)

(단위 : 톤)

도별	도별 보급종(24품종) 공급												
	계	대안	동진찰	맛드림	미품	백옥찰	삼광	새누리	새일미	신동진	영호진미	오대	오륜
계	22,450	310	800	135	360	220	4,015	200	2,340	3,600	937	880	60
경기	2,610	255		115			280					30	
강원	1,210	55		20			210					780	60
충북	1,060						360					70	
충남	4,070		100		150		2,465	80	340				
전북	3,620		450		100			100	50	2,360			
전남	4,310		200		110	120		20	1,250	1,240	300		
경북	3,360					100	700						
경남	2,210		50						700		637		

도별	도별 보급종(24품종) 공급												
	운광	일품	조평	추청	친들	하이 아미	해품	화선찰	고시 히카리	일미	해담	현품	탄력 공급
계	200	1,970	100	2,295	610	140	301	30	440	770	552	102	1,083
경기				1,400				30	440				60
강원	30			45									10
충북	10			500		90							30
충남	25			150	610								150
전북	20		20				160				180		180
전남	35		20							770			245
경북	30	1,970	30			50	50				130		300
경남	50		30	200			91				242	102	108

○ 보급종 생산계획 면적 및 종자량

<사업기관별>

구 분		보급종(24품종)					
		계	대안	동진찰	맛드림	미품	백옥찰
계	면 적 (ha)	4,388.4	68.2	161.6	29.6	72.6	43.0
	종 자 량 (kg)	228,817.0	3,471.0	8,090.0	1,480.0	3,630.0	2,150.0
	생 산 계 획 (톤)	24,479.0	341.0	889.0	148.0	391.0	237.0
	공 급 계 획 (톤)	22,450.0	310.0	800.0	135.0	360.0	220.0
경기	면 적	605.4	56.0		29.6		
	종 자 량	30,270.0	2,800.0		1,480.0		
	생 산 계 획	3,093.0	280.0		148.0		
	공 급 계 획	2,820.0	255.0		135.0		
강원	면 적	284.2	12.2				
	종 자 량	15,631.0	671.0				
	생 산 계 획	1,370.0	61.0				
	공 급 계 획	1,245.0	55.0				
충북	면 적	232.4					
	종 자 량	11,778.0					
	생 산 계 획	1,195.0					
	공 급 계 획	1,095.0					
충남	면 적	750.0				31.0	
	종 자 량	37,500.0				1,550.0	
	생 산 계 획	4,103.0				162.0	
	공 급 계 획	3,795.0				150.0	
전북	면 적	753.1		161.6		19.8	
	종 자 량	42,310.0		8,090.0		990.0	
	생 산 계 획	4,338.0		889.0		109.0	
	공 급 계 획	4,000.0		800.0		100.0	
전남	면 적	742.9				21.8	
	종 자 량	38,436.0				1,090.0	
	생 산 계 획	4,325.0				120.0	
	공 급 계 획	3,915.0				110.0	
경북	면 적	646.0					43.0
	종 자 량	32,300.0					2,150.0
	생 산 계 획	3,880.0					237.0
	공 급 계 획	3,570.0					220.0
경남	면 적	374.4					
	종 자 량	20,592.0					
	생 산 계 획	2,175.0					
	공 급 계 획	2,010.0					

※ 품종별 통합채종에 따라 종자를 생산한 도에 공급물량이 포함됨

○ 보급종 생산계획 면적 및 종자량

<사업기관별>

구 분		보 급 종(24품종)					
		삼광	새누리	새일미	신동진	영호진미	오대
계	면 적 (ha)	832.0	39.5	468.7	719.7	186.4	213.8
	종 자 량 (kg)	41,810.0	1,980.0	24,129.0	41,891.0	9,949.0	11,838.0
	생 산 계 획 (톤)	4,362.0	216.0	2,551.0	3,923.0	1,022.0	970.0
	공 급 계 획 (톤)	4,015.0	200.0	2,340.0	3,600.0	937.0	880.0
경기	면 적	62.0					
	종 자 량	3,100.0					
	생 산 계 획	310.0					
	공 급 계 획	280.0					
강원	면 적	42.0					198.0
	종 자 량	2,310.0					10,890.0
	생 산 계 획	231.0					891.0
	공 급 계 획	210.0					810.0
충북	면 적	79.0					15.8
	종 자 량	3,950.0					948.0
	생 산 계 획	395.0					79.0
	공 급 계 획	360.0					70.0
충남	면 적	511.0	16.0	67.0			
	종 자 량	25,550.0	800.0	3,350.0			
	생 산 계 획	2,666.0	87.0	366.0			
	공 급 계 획	2,465.0	80.0	340.0			
전북	면 적		23.5	9.6	461.5		
	종 자 량		1,180.0	490.0	27,690.0		
	생 산 계 획		129.0	53.0	2,538.0		
	공 급 계 획		120.0	50.0	2,360.0		
전남	면 적			255.3	258.2	60.6	
	종 자 량			12,765.0	14,201.0	3,030.0	
	생 산 계 획			1,380.0	1,385.0	330.0	
	공 급 계 획			1,250.0	1,240.0	300.0	
경북	면 적	138.0					
	종 자 량	6,900.0					
	생 산 계 획	760.0					
	공 급 계 획	700.0					
경남	면 적			136.8		125.8	
	종 자 량			7,524.0		6,919.0	
	생 산 계 획			752.0		692.0	
	공 급 계 획			700.0		637.0	

* 품종별 통합채종에 따라 종자를 생산한 도에 공급물량이 포함됨

○ 보급종 생산계획 면적 및 종자량

<사업기관별>

구 분		보 급 종(24품종)						
		오륜	운광	일품	조평	추청	친들	하이아미
계	면 적(ha)	12.0	40.0	389.0	20.0	498.4	125.0	30.0
	종 자 량(kg)	660.0	2,100.0	19,450.0	1,000.0	25,048.0	6,250.0	1,500.0
	생 산 계 획(톤)	66.0	220.0	2,140.0	110.0	2,505.0	660.0	155.0
	공 급 계 획(톤)	60.0	200.0	1,970.0	100.0	2,295.0	610.0	140.0
경기	면 적					355.2		
	종 자 량					17,760.0		
	생 산 계 획					1,776.0		
	공 급 계 획					1,620.0		
강원	면 적	12.0	20.0					
	종 자 량	660.0	1,100.0					
	생 산 계 획	66.0	110.0					
	공 급 계 획	60.0	100.0					
충북	면 적					117.6		20.0
	종 자 량					5,880.0		1,000.0
	생 산 계 획					588.0		100.0
	공 급 계 획					545.0		90.0
충남	면 적						125.0	
	종 자 량						6,250.0	
	생 산 계 획						660.0	
	공 급 계 획						610.0	
전북	면 적							
	종 자 량							
	생 산 계 획							
	공 급 계 획							
전남	면 적							
	종 자 량							
	생 산 계 획							
	공 급 계 획							
경북	면 적		20.0	389.0	20.0			10.0
	종 자 량		1,000.0	19,450.0	1,000.0			500.0
	생 산 계 획		110.0	2,140.0	110.0			55.0
	공 급 계 획		100.0	1,970.0	100.0			50.0
경남	면 적					25.6		
	종 자 량					1,408.0		
	생 산 계 획					141.0		
	공 급 계 획					130.0		

* 품종별 통합채종에 따라 종자를 생산한 도에 공급물량이 포함됨

○ 보급종 생산계획 면적 및 종자량

<사업기관별>

구 분		보 급 종(24품종)						탄력공 급량
		해품	화선찰	고시히 카리	일미	해담쌀	현품	
계	면 적(ha)	59.5	6.6	96.0	147.0	109.6	20.2	
	종 자 량(kg)	3,070.0	330.0	4,800.0	7,350.0	5,730.0	1,111.0	
	생 산 계 획 (톤)	327.0	33.0	480.0	840.0	605.0	111.0	1,177.0
	공 급 계 획 (톤)	301.0	30.0	440.0	770.0	552.0	102.0	1,083.0
경기	면 적		6.6	96.0				
	종 자 량		330.0	4,800.0				
	생 산 계 획		33.0	480.0				66.0
	공 급 계 획		30.0	440.0				60.0
강원	면 적							
	종 자 량							
	생 산 계 획							11.0
	공 급 계 획							10.0
충북	면 적							
	종 자 량							
	생 산 계 획							33.0
	공 급 계 획							30.0
충남	면 적							
	종 자 량							
	생 산 계 획							162.0
	공 급 계 획							150.0
전북	면 적	41.5				35.6		
	종 자 량	2,080.0				1,790.0		
	생 산 계 획	228.0				196.0		196.0
	공 급 계 획	210.0				180.0		180.0
전남	면 적				147.0			
	종 자 량				7,350.0			
	생 산 계 획				840.0			270.0
	공 급 계 획				770.0			245.0
경북	면 적					26.0		
	종 자 량					1,300.0		
	생 산 계 획					145.0		323.0
	공 급 계 획					130.0		300.0
경남	면 적	18.0				48.0	20.2	
	종 자 량	990.0				2,640.0	1,111.0	
	생 산 계 획	99.0				264.0	111.0	116.0
	공 급 계 획	91.0				242.0	102.0	108.0

* 품종별 통합채종에 따라 종자를 생산한 도에 공급물량이 포함됨

○ 벼 원종

구 분		원 종(30품종)					
		계	고시히카리	고향찰	대보	대안	동진찰
계	면 적 (a)	7,904.0	92.0	50.0	12.0	100.0	160.0
	종 자 량 (k g)	3,714.0	37.5	20.0	6.0	40.0	80.0
	공 급 량 (k g)	355,715.0	4,140.0	2,250.0	540.0	4,500.0	7,200.0
경기	면 적	795.0	92.0			50.0	
	종 자 량	306.0	37.5			20.0	
	공 급 량	35,775.0	4,140.0			2,250.0	
강원	면 적	600.0		50.0		50.0	
	종 자 량	240.0		20.0		20.0	
	공 급 량	27,000.0		2,250.0		2,250.0	
충북	면 적	347.0			12.0		
	종 자 량	174.0			6.0		
	공 급 량	15,615.0			540.0		
충남	면 적	1,277.0					
	종 자 량	639.0					
	공 급 량	57,500.0					
전북	면 적	1,440.0					160.0
	종 자 량	720.0					80.0
	공 급 량	64,800.0					7,200.0
전남	면 적	1,080.0					
	종 자 량	540.0					
	공 급 량	48,600.0					
경북	면 적	1,130.0					
	종 자 량	476.0					
	공 급 량	50,850.0					
경남	면 적	1,235.0					
	종 자 량	619.0					
	공 급 량	55,575.0					

* 품종별 통합채종에 따라 종자를 생산한 도에 공급물량이 포함됨

○ 버 원종

구 분		원 종(30품종)				
		맛드림	미품	백옥찰	삼광	새누리
계	면 적 (a)	25.0	403.0	130.0	1,351.0	198.0
	종 자 량 (k g)	12.5	202.0	57.0	627.5	99.0
	공 급 량 (k g)	1,125.0	18,125.0	5,850.0	60,780.0	8,900.0
경기	면 적	25.0			70.0	
	종 자 량	12.5			28.5	
	공 급 량	1,125.0			3,150.0	
강원	면 적				100.0	
	종 자 량				40.0	
	공 급 량				4,500.0	
충북	면 적				114.0	
	종 자 량				57.0	
	공 급 량				5,130.0	
충남	면 적		78.0		787.0	78.0
	종 자 량		39.0		394.0	39.0
	공 급 량		3,500.0		35,400.0	3,500.0
전북	면 적		80.0			120.0
	종 자 량		40.0			60.0
	공 급 량		3,600.0			5,400.0
전남	면 적		70.0	50.0		
	종 자 량		35.0	25.0		
	공 급 량		3,150.0	2,250.0		
경북	면 적			80.0	280.0	
	종 자 량			32.0	108.0	
	공 급 량			3,600.0	12,600.0	
경남	면 적		175.0			
	종 자 량		88.0			
	공 급 량		7,875.0			

○ 벼 원종

구 분		원 종(30품종)				
		새일미	수광	신동진	영호진미	오대
계	면 적 (a)	818.0	80.0	960.0	395.0	287.0
	종 자 량 (k g)	409.0	40.0	480.0	190.0	119.0
	공 급 량 (k g)	36,850.0	3,600.0	43,200.0	17,775.0	12,915.0
경기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강원	면 적					250.0
	종 자 량					100.0
	공 급 량					11,250.0
충북	면 적					37.0
	종 자 량					19.0
	공 급 량					1,665.0
충남	면 적	108.0				
	종 자 량	54.0				
	공 급 량	4,900.0				
전북	면 적	80.0	80.0	640.0		
	종 자 량	40.0	40.0	320.0		
	공 급 량	3,600.0	3,600.0	28,800.0		
전남	면 적	330.0		320.0	90.0	
	종 자 량	165.0		160.0	45.0	
	공 급 량	14,850.0		14,400.0	4,050.0	
경북	면 적				80.0	
	종 자 량				32.0	
	공 급 량				3,600.0	
경남	면 적	300.0			225.0	
	종 자 량	150.0			113.0	
	공 급 량	13,500.0			10,125.0	

○ 벼 원종

구 분		원 종(30품종)				
		오륜	운광	일미	일품	중생골드
계	면 적 (a)	60.0	110.0	220.0	490.0	12.0
	종 자 량 (k g)	24.0	48.0	110.0	212.0	6.0
	공 급 량 (k g)	2,700.0	4,950.0	9,900.0	22,050.0	540.0
경기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강원	면 적	60.0	30.0			
	종 자 량	24.0	12.0			
	공 급 량	2,700.0	1,350.0			
충북	면 적					12.0
	종 자 량					6.0
	공 급 량					540.0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40.0			
	종 자 량		20.0			
	공 급 량		1,800.0			
전남	면 적			220.0		
	종 자 량			110.0		
	공 급 량			9,900.0		
경북	면 적		40.0		490.0	
	종 자 량		16.0		212.0	
	공 급 량		1,800.0		22,050.0	
경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 버 원종

구 분		원 종(30품종)				
		진수미	추청	친들	하이아미	해담쌀
계	면 적 (a)	20.0	707.0	226.0	100.0	360.0
	종 자 량 (k g)	10.0	284.0	113.0	46.0	180.0
	공 급 량 (k g)	900.0	31,815.0	10,200.0	4,500.0	16,200.0
경기	면 적		500.0		40.0	
	종 자 량		180.0		20.0	
	공 급 량		22,500.0		1,800.0	
강원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충북	면 적	20.0	132.0		20.0	
	종 자 량	10.0	66.0		10.0	
	공 급 량	900.0	5,940.0		900.0	
충남	면 적			226.0		
	종 자 량			113.0		
	공 급 량			10,200.0		
전북	면 적					80.0
	종 자 량					40.0
	공 급 량					3,600.0
전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경북	면 적				40.0	80.0
	종 자 량				16.0	40.0
	공 급 량				1,800.0	3,600.0
경남	면 적		75.0			200.0
	종 자 량		38.0			100.0
	공 급 량		3,375.0			9,000.0

○ 버 원종

구 분		원 종(30품종)				
		해품	현품	호반	보람찰	삼광1호
계	면 적 (a)	270.0	110.0	30.0	98.0	30.0
	종 자 량 (k g)	135.0	55.0	12.0	47.5	12.0
	공 급 량 (k g)	12,150.0	4,950.0	1,350.0	4,410.0	1,350.0
경기	면 적				18.0	
	종 자 량				7.5	
	공 급 량				810.0	
강원	면 적			30.0		30.0
	종 자 량			12.0		12.0
	공 급 량			1,350.0		1,350.0
충북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80.0			80.0	
	종 자 량	40.0			40.0	
	공 급 량	3,600.0			3,600.0	
전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경북	면 적	40.0				
	종 자 량	20.0				
	공 급 량	1,800.0				
경남	면 적	150.0	110.0			
	종 자 량	75.0	55.0			
	공 급 량	6,750.0	4,950.0			

○ 버 원원종

구 분		원원종 (37품종)							
		계	고시 히카리	대안	등진찰	맛드림	미품	백옥찰	보람찰
계	면 적 (a)	367.00	2.50	4.00	2.00	2.00	7.00	6.00	6.00
	종 자 량(kg)	55.06	0.38	0.60	0.30	0.30	1.05	0.90	0.90
	공 급 량(kg)	5,505.00	37.50	60.00	30.00	30.00	105.00	90.00	90.00
경기	면 적	24.00	2.50	2.00		2.00			2.00
	종 자 량	3.61	0.38	0.30		0.30			0.30
	공 급 량	360.00	37.50	30.00		30.00			30.00
강원	면 적	20.00		2.00					
	종 자 량	3.00		0.30					
	공 급 량	300.00		30.00					
충북	면 적	11.00							
	종 자 량	1.65							
	공 급 량	165.00							
충남	면 적	48.00					3.00		
	종 자 량	7.20					0.45		
	공 급 량	720.00					45.00		
전북	면 적	58.00			2.00		2.00		4.00
	종 자 량	8.70			0.30		0.30		0.60
	공 급 량	870.00			30.00		30.00		60.00
전남	면 적	143.00					2.00	2.00	
	종 자 량	21.45					0.30	0.30	
	공 급 량	2,145.00					30.00	30.00	
경북	면 적	33.00						2.00	
	종 자 량	4.95						0.30	
	공 급 량	495.00						30.00	
경남	면 적	30.00						2.00	
	종 자 량	4.50						0.30	
	공 급 량	450.00						30.00	

○ 버 원원종

구 분		원원종(37품종)						
		삼광	삼광1호	새누리	새일미	수광	신동진	영호진미
계	면 적 (a)	41.30	2.00	7.00	16.00	4.00	28.00	11.00
	종 자 량 (kg)	6.20	0.30	1.05	2.40	0.60	4.20	1.65
	공 급 량 (kg)	620.00	30.00	105.00	240.00	60.00	420.00	165.00
경기	면 적	4.00						
	종 자 량	0.60						
	공 급 량	60.00						
강원	면 적	2.00	2.00					
	종 자 량	0.30	0.30					
	공 급 량	30.00	30.00					
충북	면 적	3.30						
	종 자 량	0.50						
	공 급 량	50.00						
충남	면 적	25.00		3.00	3.00			
	종 자 량	3.75		0.45	0.45			
	공 급 량	375.00		45.00	45.00			
전북	면 적			4.00	2.00	4.00	20.00	
	종 자 량			0.60	0.30	0.60	3.00	
	공 급 량			60.00	30.00	60.00	300.00	
전남	면 적				8.00		8.00	3.00
	종 자 량				1.20		1.20	0.45
	공 급 량				120.00		120.00	45.00
경북	면 적	7.00						2.00
	종 자 량	1.05						0.30
	공 급 량	105.00						30.00
경남	면 적				3.00			6.00
	종 자 량				0.45			0.90
	공 급 량				45.00			90.00

○ 버 원원종

구 분		원원종(37품종)						
		오대	오륜	운광	일미	일품	진수미	추청
계	면 적 (a)	9.30	2.00	5.00	8.00	14.00	0.70	16.70
	종 자 량 (kg)	1.40	0.30	0.75	1.20	2.10	0.10	2.50
	공 급 량 (kg)	140.00	30.00	75.00	120.00	210.00	10.00	250.00
경기	면 적							10.00
	종 자 량							1.50
	공 급 량							150.00
강원	면 적	8.00	2.00	2.00				
	종 자 량	1.20	0.30	0.30				
	공 급 량	120.00	30.00	30.00				
충북	면 적	1.30					0.70	3.70
	종 자 량	0.20					0.10	0.55
	공 급 량	20.00					10.00	55.00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2.00				
	종 자 량			0.30				
	공 급 량			30.00				
전남	면 적				8.00			
	종 자 량				1.20			
	공 급 량				120.00			
경북	면 적			1.00		14.00		
	종 자 량			0.15		2.10		
	공 급 량			15.00		210.00		
경남	면 적							3.00
	종 자 량							0.45
	공 급 량							45.00

○ 버 원원종

구 분		원원종(37품종)							
		친들	하이아미	해담쌀	현품	호반	해품	다솜쌀	상보
계	면 적 (a)	5.00	3.20	8.00	7.00	2.00	11.00	1.00	1.00
	종 자 량(kg)	0.75	0.48	1.20	1.05	0.30	1.65	0.15	0.15
	공 급 량(kg)	75.00	47.50	120.00	105.00	30.00	165.00	15.00	15.00
경기	면 적		1.50						
	종 자 량		0.23						
	공 급 량		22.50						
강원	면 적					2.00			
	종 자 량					0.30			
	공 급 량					30.00			
충북	면 적		0.70						
	종 자 량		0.10						
	공 급 량		10.00						
충남	면 적	5.00			3.00		3.00		
	종 자 량	0.75			0.45		0.45		
	공 급 량	75.00			45.00		45.00		
전북	면 적			2.00	2.00		4.00		
	종 자 량			0.30	0.30		0.60		
	공 급 량			30.00	30.00		60.00		
전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경북	면 적		1.00	3.00				1.00	1.00
	종 자 량		0.15	0.45				0.15	0.15
	공 급 량		15.00	45.00				15.00	15.00
경남	면 적			3.00	2.00		4.00		
	종 자 량			0.45	0.30		0.60		
	공 급 량			45.00	30.00		60.00		

○ 버 원원종

구 분		원원종(37품종)							
		새일품	새청무	신진백	신평	영진	예찬	조명1호	청품
계	면 적 (a)	1.00	80.00	2.00	2.00	4.00	11.00	34.00	0.30
	종 자 량 (kg)	0.15	12.00	0.30	0.30	0.60	1.65	5.10	0.05
	공 급 량 (kg)	15.00	1,200.00	30.00	30.00	60.00	165.00	510.00	5.00
경기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강원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충북	면 적	1.00							0.30
	종 자 량	0.15							0.05
	공 급 량	15.00							5.00
충남	면 적						3.00		
	종 자 량						0.45		
	공 급 량						45.00		
전북	면 적			2.00			4.00	4.00	
	종 자 량			0.30			0.60	0.60	
	공 급 량			30.00			60.00	60.00	
전남	면 적		80.00				2.00	30.00	
	종 자 량		12.00				0.30	4.50	
	공 급 량		1,200.00				30.00	450.00	
경북	면 적					1.00			
	종 자 량					0.15			
	공 급 량					15.00			
경남	면 적				2.00	3.00	2.00		
	종 자 량				0.30	0.45	0.30		
	공 급 량				30.00	45.00	30.00		

나. 콩

○ 보급종 공급계획(도별)

(단위 : 톤)

구 분		보급종 (10품종)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계		1,500	140	180	210	160	150	210	280	70	100
일 반 콩 (9)	소 계	1,300	140	180	210	160	140	120	280	70	-
	대 원	957	133	130	210	140	20	50	240	34	
	대 풍	25		25							
	대 찬	80					20	20	40		
	선 유	20				20					
	선 풍	100					100				
	연 풍	7	7								
	태 광	73						50		23	
	진 풍	13								13	
	청 아	25		25							
나 물 콩 (1)	소 계	200	-	-	-	-	10	90	-	-	100
	풍산나물	200					10	90			100

○ 보급종 생산계획 면적 및 종자량

<사업기관별>

구 분		보급종 (10품종)					
		계	대원	대풍	대찬	선유	선풍
계	면 적 (ha)	1,044.6	662.1	16.0	52.0	15.0	65.0
	종자량 (kg)	61,189.0	39,730.0	960.0	3,120.0	900.0	3,900.0
	생산계획(톤)	1,569.4	1,000.2	26.0	84.0	21.0	104.0
	공급계획(톤)	1,500.0	957.0	25.0	80.0	20.0	100.0
경기	면 적	104.2	99.0				
	종 자 량	6,252.0	5,940.0				
	생 산 계 획	145.9	138.6				
	공 급 계 획	140.0	133				
강원	면 적	147.0	115.0	16.0			
	종 자 량	8,820.0	6,900.0	960.0			
	생 산 계 획	237.0	185.0	26.0			
	공 급 계 획	230.0	180.0	25.0			
충북	면 적	146.6	146.6				
	종 자 량	8,796.0	8,796.0				
	생 산 계 획	220.0	220.0				
	공 급 계 획	210.0	210				
충남	면 적	120.0	105.0			15.0	
	종 자 량	7,200.0	6,300.0			900.0	
	생 산 계 획	168.0	147.0			21.0	
	공 급 계 획	160.0	140			20	
전북	면 적	123.1	13.1				65.0
	종 자 량	6,940.0	790.0				3,900.0
	생 산 계 획	188.0	21.0				104.0
	공 급 계 획	180.0	20				100.0
전남	면 적	141.3					
	종 자 량	7,437.0					
	생 산 계 획	200.0					
	공 급 계 획	190.0					
경북	면 적	210.0	158.0		52.00		
	종 자 량	12,600.0	9,480.0		3,120.0		
	생 산 계 획	337.0	253.0		84.0		
	공 급 계 획	320.0	240.0		80		
경남	면 적	52.4	25.4				
	종 자 량	3,144.0	1,524.0				
	생 산 계 획	73.5	35.6				
	공 급 계 획	70.0	34.0				
제주	면 적	0.0					
	종 자 량	0					
	생 산 계 획	0.0					
	공 급 계 획	0.0					

* 공급계획량은 타 도에 공급할 물량이 포함됨

○ 보급종 생산계획 면적 및 종자량

<사업기관별>

구 분		보급종 (10품종)				
		연풍	태광	진풍	청아	풍산나물
계	면 적 (ha)	5.2	54.2	10.0	16.0	149.1
	종 자 량 (kg)	312.0	3,252.0	600.0	960.0	7,455.0
	생 산 계 획 (톤)	7.3	76.9	14.0	26.0	210.0
	공 급 계 획 (톤)	7.0	73.0	13.0	25.0	200.0
경기	면 적	5.2				
	종 자 량	312.0				
	생 산 계 획	7.3				
	공 급 계 획	7.0				
강원	면 적				16.0	
	종 자 량				960.0	
	생 산 계 획				26.0	
	공 급 계 획				25.0	
충북	면 적					
	종 자 량					
	생 산 계 획					
	공 급 계 획					
충남	면 적					
	종 자 량					
	생 산 계 획					
	공 급 계 획					
전북	면 적					45.0
	종 자 량					2,250.0
	생 산 계 획					63.0
	공 급 계 획					60.0
전남	면 적		37.2			104.1
	종 자 량		2,232.0			5,205.0
	생 산 계 획		53.0			147.0
	공 급 계 획		50.0			140.0
경북	면 적					
	종 자 량					
	생 산 계 획					
	공 급 계 획					
경남	면 적		17.0	10.0		
	종 자 량		1,020.0	600.0		
	생 산 계 획		23.9	14.0		
	공 급 계 획		23.0	13.0		
제주	면 적					
	종 자 량					
	생 산 계 획					
	공 급 계 획					

* 공급계획량은 타 도에 공급할 물량이 포함됨

○ 콩 원종

구 분		원종 (11품종)					
		계	강일	대원	대찬	대풍	선유
계	면 적 (a)	7,611	200	4,480	480	100	150
	종 자 량 (kg)	4,319	100	2,568	288	50	90
	공 급 량 (kg)	90,924	2,400	53,352	5,760	1,200	1,800
경기	면 적	556		530			
	종 자 량	261		248			
	공 급 량	6,264		5,952			
강원	면 적	1,000	200	500		100	
	종 자 량	500	100	250		50	
	공 급 량	12,000	2,400	6,000		1,200	
충북	면 적	770		740	30		
	종 자 량	462		444	18		
	공 급 량	9,240		8,880	360		
충남	면 적	800		550	100		150
	종 자 량	480		330	60		90
	공 급 량	9,600		6,600	1,200		1,800
전북	면 적	1,035		530	50		
	종 자 량	616		318	30		
	공 급 량	12,420		6,360	600		
전남	면 적	950		230	100		
	종 자 량	530		138	60		
	공 급 량	11,400		2,760	1,200		
경북	면 적	1,200		950	200		
	종 자 량	720		570	120		
	공 급 량	14,400		11,400	2,400		
경남	면 적	1,000		450			
	종 자 량	600		270			
	공 급 량	12,000		5,400			
제주	면 적	300					
	종 자 량	150					
	공 급 량	3,600					

○ 콩 원종

구 분		원종(11품종)					
		선풍	연풍	진풍	청아	태광	풍산나물
계	면 적 (a)	450	26	200	200	570	755
	종자량(kg)	270	13	120	100	342	378
	공급량(kg)	5,400	312	2,400	2,400	6,840	9,060
경기	면 적		26				
	종 자 량		13				
	공 급 량		312				
강원	면 적				200		
	종 자 량				100		
	공 급 량				2,400		
충북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400					55
	종 자 량	240					28
	공 급 량	4,800					660
전남	면 적					220	400
	종 자 량					132	200
	공 급 량					2,640	4,800
경북	면 적	50					
	종 자 량	30					
	공 급 량	600					
경남	면 적			200		350	
	종 자 량			120		210	
	공 급 량			2,400		4,200	
제주	면 적						300
	종 자 량						150
	공 급 량						3,600

○ 콩 원원종

구 분		원원종(17품종)					
		계	기찬	대원	대찬	대풍	선유
계	면 적 (a)	494.0	5.0	234.0	42.0	5.0	10.0
	종자량(kg)	197.6	2.0	93.6	16.8	2.0	4.0
	공급량(kg)	4,940.0	50.0	2,340.0	420.0	50.0	100.0
경기	면 적	30.0		25.0			
	종 자 량	12.0		10.0			
	공 급 량	300.0		250.0			
강원	면 적	50.0	5.0	25.0		5.0	
	종 자 량	20.0	2.0	10.0		2.0	
	공 급 량	500.0	50.0	250.0		50.0	
충북	면 적	33.0		29.0	2.0		
	종 자 량	13.2		11.6	0.8		
	공 급 량	330.0		290.0	20.0		
충남	면 적	55.0		35.0	10.0		10.0
	종 자 량	22.0		14.0	4.0		4.0
	공 급 량	550.0		350.0	100.0		100.0
전북	면 적	90.0		20.0	10.0		
	종 자 량	36.0		8.0	4.0		
	공 급 량	900.0		200.0	100.0		
전남	면 적	60.0		15.0	5.0		
	종 자 량	24.0		6.0	2.0		
	공 급 량	600.0		150.0	50.0		
경북	면 적	90.0		65.0	15.0		
	종 자 량	36.0		26.0	6.0		
	공 급 량	900.0		650.0	150.0		
경남	면 적	55.0		20.0			
	종 자 량	22.0		8.0			
	공 급 량	550.0		200.0			
제주	면 적	31.0					
	종 자 량	12.4					
	공 급 량	310.0					

○ 콩 원원종

구 분		원원종(17품종)					
		선풍	신화	연풍	진풍	청아	태광
계	면 적 (a)	52.0	6.0	4.0	10.0	15.0	25.0
	종자량(kg)	20.8	2.4	1.6	4.0	6.0	10.0
	공급량(kg)	520.0	60.0	40.0	100.0	150.0	250.0
경기	면 적			4.0			
	종 자 량			1.6			
	공 급 량			40.0			
강원	면 적					15.0	
	종 자 량					6.0	
	공 급 량					150.0	
충북	면 적	2.0					
	종 자 량	0.8					
	공 급 량	20.0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30.0					
	종 자 량	12.0					
	공 급 량	300.0					
전남	면 적						15.0
	종 자 량						6.0
	공 급 량						150.0
경북	면 적	10.0					
	종 자 량	4.0					
	공 급 량	100.0					
경남	면 적	10.0			10.0		10.0
	종 자 량	4.0			4.0		4.0
	공 급 량	100.0			100.0		100.0
제주	면 적		6.0				
	종 자 량		2.4				
	공 급 량		60.0				

○ 콩 원원종

구 분		원원종(17품종)					
		풍산나물	미소	아람	강풍	대풍2호	청자4호
계	면 적 (a)	40.0	10.0	20.0	1.0	10.0	5.0
	종자량(kg)	16.0	4.0	8.0	0.4	4.0	2.0
	공급량(kg)	400.0	100.0	200.0	10.0	100.0	50.0
경기	면 적				1.0		
	종 자 량				0.4		
	공 급 량				10.0		
강원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충북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10.0	10.0			10.0	
	종 자 량	4.0	4.0			4.0	
	공 급 량	100.0	100.0			100.0	
전남	면 적	20.0		5.0			
	종 자 량	8.0		2.0			
	공 급 량	200.0		50.0			
경북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경남	면 적						5.0
	종 자 량						2.0
	공 급 량						50.0
제주	면 적	10.0		15.0			
	종 자 량	4.0		6.0			
	공 급 량	100.0		150.0			

다. 감자

○ 원원종, 원종

구 분		원원종 (5품종)			원 종 (5품종)		
		면 적	종자량	공급량	면 적	종자량	공급량
계		a 450	kg 5,850	kg 67,500	a 4,470	kg 62,580	kg 804,600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수 미	424	5,512	63,600	4,310	60,340	775,800
	하 령	4	52	600	20	280	3,600
	조 풍	8	104	1,200	80	1,120	14,400
	서 흥	2	26	300	10	140	1,800
	오 룬	12	156	1,800	50	700	9,000

라. 옥수수

구 분		원원종			원 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급량	면 적	종자량	공급량	면 적	종자량	공급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강원	미백2호 (HW9)				200	40	1,000			
	미흑찰 (HW7)				50	10	250			

마. 팔

구 분		원원종(3품종)			
		계	충주	새길	아라리
계	면 적 (a)	26.00	6.00	5.00	15.00
	종 자 량 (k g)	7.90	1.80	1.50	4.60
	공 급 량 (k g)	158.00	36.00	30.00	92.00
경기	면 적	4.00			4.00
	종 자 량	1.20			1.20
	공 급 량	24.00			24.00
강원	면 적	8.00			8.00
	종 자 량	2.50			2.50
	공 급 량	50.00			50.00
충북	면 적	1.00	1.00		
	종 자 량	0.30	0.30		
	공 급 량	6.00	6.00		
충남	면 적	-			
	종 자 량	-			
	공 급 량	-			
전북	면 적	3.00			3.00
	종 자 량	0.90			0.90
	공 급 량	18.00			18.00
전남	면 적	5.00	5.00		
	종 자 량	1.50	1.50		
	공 급 량	30.00	30.00		
경북	면 적	5.00		5.00	
	종 자 량	1.50		1.50	
	공 급 량	30.00		30.00	
경남	면 적	-			
	종 자 량	-			
	공 급 량	-			

구 분		원종(3품종)				보급종(1품종)	
		계	충주	새길	아라리	계	아라리
계	면 적 (a)	245.0	40.0	25.0	180.0	1,210.0	1,210.0
	종 자 량 (k g)	96.0	16.0	10.0	70.0	610.0	610.0
	공 급 량 (k g)	1,685.0	280.0	175.0	1,230.0	10,000.0	10,000.0
경기	면 적	50.0			50.0	-	
	종 자 량	18.0			18.0	-	
	공 급 량	320.0			320.0	-	
강원	면 적	100.0			100.0	600.0	600.0
	종 자 량	40.0			40.0	300.0	300.0
	공 급 량	700.0			700.0	5,000.0	5,000.0
충북	면 적	10.0	10.0			-	
	종 자 량	4.0	4.0			-	
	공 급 량	70.0	70.0			-	
충남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전북	면 적	30.0			30.0	610	610.0
	종 자 량	12.0			12.0	310.0	310.0
	공 급 량	210.0			210.0	5,000.0	5,000.0
전남	면 적	30.0	30.0			-	
	종 자 량	12.0	12.0			-	
	공 급 량	210.0	210.0			-	
경북	면 적	25.0		25.0		-	
	종 자 량	10.0		10.0		-	
	공 급 량	175.0		175.0		-	
경남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바. 녹두

구 분		원원종(2품종)			원 종(1품종)	
		계	다현	산포	계	다현
계	면 적 (a)	14.00	8.00	6.00	75.0	75.0
	종 자 량 (k g)	2.10	1.20	0.90	11.0	11.0
	공 급 량 (k g)	70.00	40.00	30.00	375.0	375.0
경기	면 적	1.00	1.00		35.0	35.0
	종 자 량	0.15	0.15		5.0	5.0
	공 급 량	5.00	5.00		175.0	175.0
강원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충북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충남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전북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전남	면 적	12.00	6.00	6.00	20.0	20.0
	종 자 량	1.80	0.90	0.90	3.0	3.0
	공 급 량	60.00	30.00	30.00	100.0	100.0
경북	면 적	1.00	1.00		20.0	20.0
	종 자 량	0.15	0.15		3.0	3.0
	공 급 량	5.00	5.00		100.0	100.0
경남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제주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사. 참깨

구 분		원원종 (1품종)		원종(2품종)		
		계	건백	계	서둔	건백
계	면 적 (a)	14.3	14.3	340.00	20.00	320.00
	종 자 량 (k g)	0.72	0.72	16.75	1.00	15.75
	공 급 량 (k g)	28.5	28.5	1,005.00	60.00	945.00
경기	면 적	1.00	1.00	45.00		45.00
	종 자 량	0.05	0.05	2.00		2.00
	공 급 량	2.00	2.00	120.00		120.00
강원	면 적	1.00	1.00	20.00	20.00	
	종 자 량	0.05	0.05	1.00	1.00	
	공 급 량	2.00	2.00	60.00	60.00	
충북	면 적	0.30	0.30	10.00		10.00
	종 자 량	0.02	0.02	0.50		0.50
	공 급 량	0.50	0.50	30.00		30.00
충남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전북	면 적	2.00	2.00	15.00		15.00
	종 자 량	0.10	0.10	0.75		0.75
	공 급 량	4.00	4.00	45.00		45.00
전남	면 적	1.00	1.00	10.00		10.00
	종 자 량	0.05	0.05	0.50		0.50
	공 급 량	2.00	2.00	30.00		30.00
경북	면 적	6.00	6.00	200.00		200.00
	종 자 량	0.30	0.30	10.00		10.00
	공 급 량	12.00	12.00	600.00		600.00
경남	면 적	3.00	3.00	40.00		40.00
	종 자 량	0.15	0.15	2.00		2.00
	공 급 량	6.00	6.00	120.00		120.00
제주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아. 들깨

구 분		원원종 (2품종)			원종 (2품종)		
		계	다유	들샘	계	다유	들샘
계	면 적 (a)	5.10	4.80	0.30	149.00	139.00	10.00
	종 자 량 (kg)	0.17	0.16	0.01	4.55	4.25	0.30
	공 급 량 (kg)	13.70	12.70	1.00	445.00	415.00	30.00
경기	면 적	1.00	1.00		30.00	30.00	
	종 자 량	0.03	0.03		1.00	1.00	
	공 급 량	3.00	3.00		90.00	90.00	
강원	면 적	0.50	0.50		20.00	20.00	
	종 자 량	0.02	0.02		0.60	0.60	
	공 급 량	1.50	1.50		60.00	60.00	
충북	면 적	1.00	1.00		40.00	40.00	
	종 자 량	0.04	0.04		1.20	1.20	
	공 급 량	1.20	1.20		120.00	120.00	
충남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전북	면 적	2.00	2.00		15.00	15.00	
	종 자 량	0.06	0.06		0.45	0.45	
	공 급 량	6.00	6.00		45.00	45.00	
전남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경북	면 적	0.30	0.30		34.00	34.00	
	종 자 량	0.01	0.01		1.00	1.00	
	공 급 량	1.00	1.00		100.00	100.00	
경남	면 적	0.30		0.30	10.00		10.00
	종 자 량	0.01		0.01	0.30		0.30
	공 급 량	1.00		1.00	30.00		30.00
제주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자. 땅콩

구 분		원원종 (2품종)			원종(3품종)			
		계	풍안	신팔광	계	대광	풍안	신팔광
계	면 적 (a)	18.0	4.0	14.0	159.0	10.0	30.0	119.0
	종자량(kg)	19.2	4.4	14.8	172.0	10.0	33.0	129.0
	공급량(kg)	181.0	40.0	141.0	1,590.0	100.0	300.0	1,190.0
경기	면 적	5.0		5.0	45.0			45.0
	종 자 량	5.5		5.5	50.0			50.0
	공 급 량	50.0		50.0	450.0			450.0
강원	면 적	1.0		1.0	10.0	10.0		
	종 자 량	0.8		0.8	10.0	10.0		
	공 급 량	10.0		10.0	100.0	100.0		
충북	면 적	1.0		1.0	10.0			10.0
	종 자 량	1.1		1.1	11.0			11.0
	공 급 량	11.0		11.0	100.0			100.0
충남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전북	면 적	1.0		1.0	10.0			10.0
	종 자 량	0.8		0.8	8.0			8.0
	공 급 량	10.0		10.0	100.0			100.0
전남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경북	면 적	6.0		6.0	54.0			54.0
	종 자 량	6.6		6.6	60.0			60.0
	공 급 량	60.0		60.0	540.0			540.0
경남	면 적	4.0	4.0		30.0		30.0	
	종 자 량	4.4	4.4		33.0		33.0	
	공 급 량	40.0	40.0		300.0		300.0	
제주	면 적	-			-			
	종 자 량	-			-			
	공 급 량	-			-			

차. 고구마

구 분		원원종(2품종)			원종(2품종)		
		계	호감미	진율미	계	호감미	풍원미
계	면 적 (a)	6.0	1.0	5.0	40.0	10.0	30.0
	총 자 량 (kg)	45.0	7.5	37.5	262.5	37.5	225.0
	공 급 량 (kg)	780.0	130.0	650.0	5,200.0	1,300.0	3,900.0
경기	면 적	-			-		
	총 자 량	-			-		
	공 급 량	-			-		
강원	면 적	-			-		
	총 자 량	-			-		
	공 급 량	-			-		
충북	면 적	-			-		
	총 자 량	-			-		
	공 급 량	-			-		
충남	면 적	-			-		
	총 자 량	-			-		
	공 급 량	-			-		
전북	면 적	2.0	1.0	1.0	10.0	10.0	
	총 자 량	15.0	7.5	7.5	37.5	37.5	
	공 급 량	260.0	130.0	130.0	1,300.0	1,300.0	
전남	면 적	-			-		
	총 자 량	-			-		
	공 급 량	-			-		
경북	면 적	-			-		
	총 자 량	-			-		
	공 급 량	-			-		
경남	면 적	4.0		4.0	30.0		30.0
	총 자 량	30.0		30.0	225.0		225.0
	공 급 량	520.0		520.0	3,900.0		3,900.0
제주	면 적	-			-		
	총 자 량	-			-		
	공 급 량	-			-		

4. 부족종자 사용계획

가. 원원종 생산(기본식물 활용)

(단위 : kg)

작물	인수기관 (종자부족)			인계기관(종자보유)											
	도	품종	수량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제주	원원종	재증식
콩	경북	대찬	1.8	2										1.8	경북 1.8

나. 원종 생산(원원종 활용)

(단위 : kg)

작물	인수기관 (종자부족)			인계기관(종자보유)											
	도	품종	수량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제주	원종	재증식
벼	소계		640	640	10		303		27	18	24	9		249	
	충남	삼광	79	79	5							9		65	충남 65
		친들	38	38										38	충남 38
	전북	새일미	40	40			36							4	전남 4
	전남	미품	35	35										35	전남 35
		새일미	165	165			165								
	경남	미품	57	57										57	전북 57
		새일미	102	102			102								
		영호진미	18	18					18						
		해품	10	10						10					
		현품	9	9						9					
	경기	대안	5	5	5										
		추청	30	30							24			6	경기 6
		소계		349	349			68	154	60					67
	콩	충북	대원	154	154				154						
경남		대원	60	60					60						
		진풍	12	12										12	경남 12
경기		태광	55	55										55	경남 55
		대원	68	68			68								

* 전남 새일미(165kg) 및 경남 새일미(102kg) 부족분은 충남지원에 저온비축한 '17년산 원원종(충남산) 활용

다. 보급종 생산(원종 활용)

(단위 : kg)

작물	인수기관(종자부족)			인계기관(종자보유)												
	도	품종	수량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제주	보급종	재증식	
벼	합 계		32,883	34,083	550	920	2,410	5,480			1,200		1,657	21,866		
	소계		26,875	28,075	550	920	490	5,480			1,200			19,435		
	강원	오대	920	920		920										
	전북	동진찰	8,090	8,090				4,480							3,610	전북 3,610
		새일미	490	490			490									
		해담쌀*		1,200							1,200					
	전남	새일미	8,609	8,609											8,609	전남 8,609
		신동진	6,201	6,201											6,201	전남 6,201
	경북	조평	1,000	1,000				1,000								
	경기	고시히카리	660	660											660	경기 660
		대안	550	550	550											
		맛드림	355	355											355	경기 355
	소계		6,008	6,008			1,920						1,657	2,431		
콩	전북	선평	2,100	2,100										2,100	전북 1,860 (전북산 비축 160, 전남산 비축80)	
		풍산나물	1,590	1,590									1,590			
	전남	태광	169	169										169	전남 101 (원원종 68)	
		풍산나물	67	67									67			
	경북	대찬	1,920	1,920			1,920									
	경기	연풍	162	162										162	경기 162	

주1) <벼> 전북 해담쌀 원종 중 일부는 경남산 원종 1,200kg 활용

주2) <벼> 전북 동진찰 부족분 중 4,480kg 은 전북지역에 저온비축한 '17년산 원종(전북산) 활용

주3) <콩> 전북 선평 부족분 중 160kg는 전북지역에 저온비축한 '17년산 원원종(전북산)을 활용하고,

80kg는 전남지역에 저온비축한 '17년산 원원종(전남산)으로 활용

주4) <콩> 전남 태광 부족분 68kg는 전남산 원원종을 격하 사용

5. 벼·콩 보급종 통합 채종계획

○ 벼 : 1,065톤 (9 품종)

품종명	물량 (톤)	공급기관	생산기관	비고
합계	1,065	-	-	
등진찰	350	충남 100, 전남 200, 경남 50	전북	
맛드림	20	강원 20	경기	
백옥찰	120	전남 120	경북	
조평	70	전북 20, 전남 20, 경남 30	경북	
새누리	20	전남 20	전북	
오대	30	경기 30,	강원	
해품	50	경북 50	전북	
운광	70	충북 10, 충남 25, 전남 35	강원	
	70	전북 20, 경남 50	경북	
추청	45	강원 45	충북	
	220	충남 150, 경남 70	경기	

○ 콩 : 190톤 (3 품종)

품종명	물량 (톤)	공급기관	생산기관	비고
합계	190	-	-	
대원	50	전남 50	강원	
대찬	40	전북 20, 전남 20	경북	
풍산나물	50	제주 50	전북	
	50	제주 50	전남	

V

단계별 사업담당 및 종자생산 기준

1. 종자생산 단계별 사업 담당

	원 원 종	원 종	보 급 종
벼	도 농업기술원	도 원종장	국립종자원 (경기도종자관리소)
콩	〃	〃	국립종자원 (경기도종자관리소, 제주도농업기술원)
옥수수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자체생산(시·도)
감 자	강 원 도 감자종자진흥원	강 원 도 감자종자진흥원	자체생산(시·도)
팥	도 농업기술원	도 원종장	국립종자원, 자체생산(시·도)
녹 두	〃	〃	자체생산(시·도)
고구마	〃	〃	〃
참 깨	〃	〃	〃
들 깨	〃	〃	〃
땅 콩	〃	〃	〃

* 광역시(특별시 포함) 보급종 공급에 소요되는 원원종, 원종생산은 광역시 승격 이전에 소속 되었던 해당 도에서 생산

2. 작물별, 생산단계별 파종 및 생산 기준량

(단위 : kg/ha)

작 물 별		원 원 종			원 종			보 급 종		
		파종	생산량	배율	파종	생산량	배율	파종	생산량	배율
벼	수 도	15	1,500	100	50	4,500	90	50	5,500	110
	육 도	20	800	40	35	1,200	34	50	1,500	30
	초다수성	15	2,000	133	40	5,000	125	50	7,000	140
콩	일반콩	40	1,000	25	60	1,200	20	60	1,400	23
	콩나물콩	40	1,000	25	50	1,200	24	50	1,400	28
팥		30	600	20	40	700	17.5	50	900	18
녹 두		15	500	33	15	500	33	20	800	40
고 구 마		750	13,000	17	750	13,000	17	750	13,000	17
감자	봄 감 자	1,200	12,000	10	1,300	16,000	12.3	1,600	18,000	11.3
	가을감자	1,800	13,000	7.2	1,800	13,000	7.2	1,800	16,000	8.9
옥수수	광평옥	20	800	40	20	1,000	50	33	1,600	48.5
	일미찰	20	400	20	20	700	35	30	1,300	43.3
	흑진주찰	20	400	20	20	700	35	30	1,200	40.0
땅콩	보통종	80	1,000	12.5	80	1,000	12.5	100	1,200	12
	대립종	110	1,000	9.1	110	1,000	9.1	135	1,200	8.9
참 깨		5	200	40	5	300	60	8	400	50
들 깨		3	300	100	3	300	100	3	400	133
유 채		0.5	1,000	2,000	0.5	1,500	3,000	10	1,800	180

* ① 보급종 생산기준량은 공급목표량을 감안, 국립종자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② 옥수수 원원종·원종은 자식계통, 보급종은 단교잡종 생산 기준량임

VI

작물별 세부 추진요령

1. 공통사항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세부실천 계획 수립	가) 채종기관은 자체 종자생산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고품질 우량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조치	채 종 기 관
2) 종자활용	<p>가) 단계별 생산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별, 품종별 종자생산·공급 계획에 의거하여 생산한 종자는 차 하급단계 생산용 종자로 무상 공급 (단, 도비 생산종자는 도지사가 방침 결정 시행) <p>나) 채종기관이 생산한 종자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사를 받은 후 차 하급단계 채종기관에 인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급종 채종용으로 활용하는 벼·콩·팥(아라리)의 원원종·원종은 불합격품 및 사용 잔량을 관할 국립종자원(지자체 포함)에 인계 * 다만, 잔량이 10kg이하인 품종은 국립종자원 해당 지원과 협의 후 자체 활용가능 ○ 채종 단계별로 안정적인 종자확보를 위해 소요 종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필요 시 재증식 활용 가능 <p>다) 종자 수송조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생산에 필요한 종지는 수요기관에서 책임 인수(수송) <p>라) 종자생산 단계별 생산에 활용하고 남는 종자는 차 하급단계 종자생산에 우선활용</p>	채 종 기 관
3) 생산비 보조	<p>가) 생산사업비 국고보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액 : 5,692백만원(전년과 동일) ○ 국고보조금액은 도별 사업량에 따라 확정('19.3.) <p>나) 원원종·원종 생산목표량 미달 시 익년도 보조금 차등 지원. 단,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p>	종자원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4) 기본식물	<p>가) 농촌진흥청장은 작물별 기본식물 생산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보급종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농가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품종별 적정량 생산</p> <p>나) 종자수급상 긴급한 증식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각 품종별로 여유 있게 생산</p> <p>다) 기본식물 부족으로 하위단계 종자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품종은 동계증식을 통하여 최대한 증량생산</p> <p>라) 종자전염병(키다리병 등) 관리를 위해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고 기본식물 포장 외 지역적응성 포장, 육종 포장의 철저한 관리 실시</p>	농진청
5) 원원종, 원종, 보급종	<p>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p> <p>나)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채종포장 관리, 수확 및 조제작업을 실시. 다만 채종기관장 책임 하에 우량종자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확립한 재배기준 및 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p> <p>다) 고품질 품종 중 각 지자체에 맞는 4~6개 품종을 선발하여 농가에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 실시</p> <p>라) 금년도 신규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을 활용하여 차 하급단계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에서는 품종 육성기관으로부터 재배상 품종의 이상 유무를 다시 확인 받아서 종자로 활용</p> <p>마) 원종 생산기관의 잉여포장에는 신규 보급종 생산 품종을 최우선 재배하도록 하고, 남는 포장은 찰벼 또는 조생종벼 등 종자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품종을 생산</p>	채 종 기 관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6) 기타	바) 종자생산은 생산된 전량에 대하여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를 실시하여 차 하급단계 종자생산에 활용	행정 (종자원)
	사) 보급종 생산포장에 전담지도사를 지정하여 파종, 시비, 방제 등 채종포장 관리를 책임지도하도록 조치	각 도
	아) 해당도 생산종자는 해당도 책임 하에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도 지사는 종자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종자공급 차질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후대책 강구 ○ 종자생산·공급계획에 반영된 보급종 품종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수매품종 선정 등 조치 ○ 일방적인 종자공급 중단 등 종자갱신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때에는 각종 종자생산 공급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 	각 도 종자원
	자) 종자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종자 소독을 하고 채종포와 주변포장 관리	채 종 기 관
	가) 녹두, 고구마, 참깨 등 보급종을 생산하지 않는 곡종은 원종급 이상 생산된 종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종자 생산용으로 활용	각 도
	나) 종자를 공급받은 농가는 채종농가로 지정하여 보급종 생산농가에 준하는 기술지도 실시	각 도
	다)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의거 포장검사 및 종자 검사를 실시하여 농가 보급	각 도
	라) 생산된 보증종자에 대하여 공급실적 대장을 별도 비치 관리하여 우량종자가 농가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각 도

항 목	실 천 사 항	시 한	담당 (협조)
7) 보고내용	마) 작물별 보급종 사후관리 시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 벼, 콩 ○ 조사항목 : 순도, 진위성, 종자전염병 ○ 조사기준 : 종자검사요령(종자원 고시) ○ 조사연도 : 매년 * 사후관리시험 세부기준 및 방법은 국립종자원 세부추진 계획에 의함		종자원
	가) 주요작물종자 채종단계별 생산실적 보고	2020.1.5	채종기관
	나) 2020년 작물별, 채종단계별 생산계획 수립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로 4~6개 고품질 품종을 선정하여 농가보급 확대 추진 ○ RPC의 수매 품종 및 시군별 수매선정 품종을 참고하여 종자생산 계획에 최대한 반영 ○ 들녘경영체, 정부지원 RPC, 시군농업기술센터장이 위의 업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업체에 대한 품종별 종자수요량 조사 ○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품종 위주로 생산하되 신품종 보급을 위한 농가 홍보 계획을 수립 추진 ○ 익년도 차 하급단계 종자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단계 종자는 충분한 물량을 생산 	2020.2.5	채종기관

2. 비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품종개발	가) 밥맛이 우수하고 병충해, 도복 등에 대한 내재해성을 갖춘 고품질 품종 나) 가공용, 직파적응성, 유색미, 향미 등 특수용도에 적합한 품종 다) 개발된 계통 중 특히 우수한 계통은 농가에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원원종급 종자를 동시 생산	농진청
2) 기본식물	가) 채종단계별, 품종별 수요량을 감안한 생산계획을 수립하되 긴급한 상황 발생시 종자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자생산·보관 나) 품종별 재배특성을 고려, 채종지 선정에 유의하고 특히 신품종 채종의 경우 시험재배성적과 다른 재배 특성 등이 있는 때에는 계통 보고하여 차년도 채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3) 원원종, 원종	가) RPC, 들녘경영체 등 대량 수요처의 선호도가 높은 고품질 품종 위주의 종자를 생산하여 차년도 종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채종하되 생산된 전량을 종자 생산 실적으로 보고 나) 최근에 육성된 신품종의 채종기관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품종육성 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 유지	각 도
4) 보 급 종	가) 채종포장 지정·재배관리는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품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관리 ○ 병해 상습발생 지역은 채종지역에서 제외	종자원 지자체종자 생산기관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p>나) 경영체 중심으로 보급종 우선 공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의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제고 및 벼 보급종 공급량 확대에 따라 신청·공급체계를 들녘경영체, 정부지원 RPC,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이 위의 업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업체 등 대량수요처 중심으로 우선 신청·공급 전환 ○ 우선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신청량을 우선공급하고, ○ 기타 일반농가, 육묘장 등에 대해서는 품종별 공급 배정량을 도 농업기술원과 협의하여 조정·결정 	농식품부 종자원 각 도
	<p>다) 채종농가 생산지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종농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채종포에는 전담지도사를 지정하여 파종, 시비, 포장검사, 건조, 수매 등 재배기술의 현장 지도 	종자원 각 도
	<p>라) 농업기술센터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 위주로 전시포를 설치하여 농가 홍보 ○ 재배완료 후 관련기관, 재배농가가 참가하는 평가회 개최 ○ 종자용으로 농가에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보증을 받는 등 종자산업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 	농진청 각 도

3. 콩, 팥, 녹두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품종개발	가) 특수용도에 적합한 품종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나물용 콩, 밥밑콩, 울콩, 고단백콩 등 ○ 특히 콩나물용 콩은 재래종 수준의 소립종 품종 개발을 강화하고, 내병·충성 및 수량성이 우수한 품종개발 나) 다수성, 내재해성, 대립종, 장류용 품종 개발	농진청
2) 원원종, 원종	가) 수입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성이 좋고 농가 및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우량 품종 위주로 생산 나) 우량 신품종의 농가 확대 공급을 위하여 농가 선호도의 변화, 재해 발생 등을 감안하여 생산 품종을 다양화하고 채종량 확대 다) 채종된 종자는 전량 종자검사를 받아 하위단계 종자로 활용	농진청 각 도
3) 보 급 종	가) 콩 보급종 채종포장 지정·관리는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과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충해 상습 발생지는 제외 나) 신규 육성 품종 채종포장 선정 및 포장관리는 전담지도사를 지정하여 농가 지도	종자원 각 시·군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p>다) 보급종을 생산하지 않는 녹두는 여유 종자 전량을 종자로 활용</p>	각 도
	<p>라) 자율 채종포장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도지사는 국립종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 자체 자율교환 종자생산계획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갱신률 제고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최근 육성된 신품종 및 특수용도 품종 적극 권장 ○ 채종포장은 대 면적으로 집단화를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을별 단지 조성 및 각 도 원종장 잉여포장 적극 활용 ○ 생산관리지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종 채종관리에 준하여 전담지도사를 배치 - 채종농가 채종기술 지도철저 - 파종, 시비, 포장검사, 건조, 수매 등 주요 작업 시기에 입회하여 지도 	각 도

4. 감 자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기본식물	<p>가) 채종단계별, 품종별 농가선호도 등 수요량을 감안하고, 기상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종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품종을 채종·보관</p> <p>나) 종자산업법과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 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채종하고 채종포장 전 면적의 망실재배로 바이러스 감염 등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우량종자를 생산</p> <p>다) 생산된 기본식물은 우선 원원종 생산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원원종 생산용으로 활용되지 않은 종자는 농업기술센터의 품종 비교 전시포에 무상 공급하여 농가홍보용으로 활용하거나 통상실시권 부여 등의 조건으로 민간에 공급</p>	농진청 (고령지 농업 연구소)
2) 원원종	<p>가) 바이러스 이병방지를 위해 전량 망실재배 실시 ○ 원원종 재배면적 확대 필요시 소요예산 확보 추진(국립종자원, 강원도)</p> <p>나) 원종 생산용으로 활용하고 남은 종자는 보급종으로 격하 공급</p>	감자종자 진흥원, 종자원
3) 원종	<p>가) 생산기관 :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p> <p>나) 바이러스 이병방지를 위하여 전량 망실재배</p> <p>다) 씨감자 채종기반 확대를 위해 전북 무주, 경북 봉화군에 원종 지속 공급</p> <p>라) 원종잔량 발생시 보급종으로 격하 공급</p>	감자종자 진흥원, 종자원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4) 공 통	<p>가) 바이러스 등 병충해 검정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기기(유전자분석장치: PCR 등)의 효율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은 병충해 전문요원을 지속 양성 - 종자 검사기관은 PCR 등을 활용한 정밀검정 실시 ○ 바이러스 매개 진딧물 비래상황 정밀예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색수반 : 채종지구별, 단계별로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 지침』에 의하여 설치 ○ 진딧물 방제 약제(토양처리제) 처리 철저 <p>나) 역병 예방 및 방제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병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집중방제를 실시하여 우량종자 생산 <p>다) 풋마름병 예방 및 방제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병 씨감자 사용 ○ 무병지 채종을 위하여 재배 과정 중 유사 증상 발생시 토양검정 실시 ○ 발생필지는 씨감자 생산필지에서 제외 <p>라) 동계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작물 : 봄감자 ○ 주관기관 : 국립종자원,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 재배기관 :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 자문기관 : 고령지농업연구소 ○ 검정용 시료의 적기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 채취량(경종기준의 재식 주수 기준) ·원원종 : 0.5%, 원종 : 0.2% ○ 검정용 시료 조기 안전 수송 ○ 동계 검정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를 확보하되, 국비확보가 곤란할 시 지자체(강원도) 예산 확보 추진 	농진청 (감자종자 진흥원, 전북,경북)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5) 기 타	마) 채종기관 기술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 ○ 채종기관 상호 간의 정보교환 활성화 ○ 우량종자 생산 기술의 상호지원	농진청 (감자종자 진흥원)
	바) 채종포장 환경개선 ○ 이병주 조기제거 철저 ○ 적응농약 적기살포 ○ 법정 격리거리 내의 오염식물 식재방지 및 제거	
	가) 채종포 주변 정화 ○ 원종 잔량 및 규격외서는 채종지 주변의 환경 정화용으로 유상 공급 가능 ○ 정화 지역에는 보급종 잔량을 최우선 공급	감자종자 진흥원
	나) 민간의 씨감자 생산 참여 유도를 위하여 종자를 생산하지 않는 품종 및 잉여 원종잔량은 생산자 단체에 유상 분양. 다만 민간참여로 보급종 생산이 중단되는 품종은 감자 종자 안정공급을 위하여 원종까지는 정부에서 계속 생산	종자원
	다) 신규육성품종의 농가 홍보강화를 위하여 차 하급 단계 종자로 활용하고 남는 종자는 농업기술센터의 품종비교 전시포에 무상 공급하여 농가 홍보용 으로 활용 ○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 및 평가회 개최	농진청 (고령지농업 연구소)
라) 가을감자는 수급전망 등을 분석하여 농진청과 종자원이 협의하여 종자생산체계 확립 여부 검토	농진청 (종자원)	

5. 고구마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신품종 육성 및 기본식물 생산	<p>가) 고 전분 가공용, 생식용, 고 감미성 등 품종 고유 특성이 우수한 품종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 형질 및 유전자원 수집 확보 ○ 적지 시험 및 각 도 재해 검정시험 강화 <p>나) 계통 유지와 기상재해 등 긴급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품종별로 충분한 종자를 확보</p>	농진청
2) 원원종, 원종	<p>가) 농가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위주로 생산하되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생산량 확보</p> <p>나)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순도높은 우량 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병해 상습발생 지역은 윤작체계를 유지</p> <p>다) 생산된 종자는 저장고에 보관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감모량 최소화</p> <p>라) 종자 공급 시는 반드시 출고검사를 실시하여 불량한 종자의 농가공급 사전방지</p>	농진청
3) 보 급 종 (기타)	<p>가)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도기관의 시범포 또는 시·군 채종포를 설치하여 우량종자 생산</p> <p>나) 농가에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급종 종자에 준하여 생산·지도하고, 종자검사를 받은 후 공급하여 우량종자가 농가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채종 농가 관리 철저</p>	농진청

6. 옥수수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신품종 육성	가) 사료용 품종의 적극 개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품종에 대응한 대체품종 적극 개발 ○ 우량 형질 및 유전자원 수집 확보 ○ 재배 적지시험 및 지역별(각도) 재해검정 시험 강화 나) 단계별 종자생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품종특성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차년도 종자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농진청
2) 기본식물	가) 기본식물은 계통유지와 기상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품종별로 충분한 종자 확보 나) 현재 보유중인 원원종 재고량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년도 종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다) 재고종자는 종자검사를 받아 우량종자만 활용	농진청, 강원도 옥수수 시험장
3) 원종	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종만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자연교잡 및 혼종방지를 위하여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과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 준수 ○ 채종이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채종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 하급단계 종자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수확물 관리 철저 ○ 옥수수 원종 사용 잔량은 차년도 종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 철저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4) 종자활용	<p>가) 우량종자 중 생산년도가 오래된 원원종, 원종을 먼저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보관중인 원원종, 원종은 발아시험 등을 거쳐 우량종자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기간 10년 이상 경과, 발아율이 85% 미만, 향후 종자 활용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매각·폐기 조치 ○ 사용 잔량은 차년도 종자생산용으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및 발아율 점검 	종자원

7. 참깨, 들깨, 땅콩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원원종, 원종	가) 참깨, 들깨, 땅콩의 품종별 주요특성을 감안하여 최적 채종포장을 선정 나) 다수확 재배방법을 지양하고 소비 재배를 통한 건전한 종자생산 다) 병충해의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병해 발생시에는 초기 방제를 실시하여 무병 우량종자를 생산 라) 이상 기후, 병해충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종자 확보 마) 신품종의 생육단계를 시험재배 성적과 비교 분석하여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여 농가공급 시 문제점 사전 해소	농진청
2) 기 타	가) 해당 시·도지사는 신품종 공급 부진지역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인, 독농가를 채종농가로 선정 * 채종포는 농촌진흥청장이 설치하는 시범포를 우선 지정 활용 나) 농가채종포 설치 및 추진상황 점검 등 농가지도 철저 다) 농가채종포에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채종농가 사전교육, 병충해 예찰강화 등을 통한 우량종자 생산 라) 농가채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는 종자검사 후 희망 농가에 공급	농진청

VII

작물별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요령

VII

작물별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요령

항 목	실 천 사 항				시 한	담당 (협조)
1) 합동진단	가) 병해충 발생 사전진단과 순도유지를 위하여 합동 진단 실시 ○ 합동진단 실시회수 및 기관				7월 중 8월 중	농진청 (생산기관)
	작물별	단계별	회수	진단기관		
	봄감자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1회	농진청(고령지농업연구소), 종자원, 감자종자진흥원		
	옥수수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1회	농진청(식량과학원), 종자원		
	나) 합동진단 내용 및 방법 ○ 진단순서 : 기본식물→원원종→원종→보급종 - 단, 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 ○ 병해충 진단 및 순도향상을 위한 채종방법 등 정보교환 ○ 채종상의 문제점 분석 및 채종방법 개선조치 ○ 채종기술 지도 및 교육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2) 포장검사	가) 종자산업법 관련규정 및 『종자검사 요령』에 의한 포장검사 실시 나) 작물별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종자원 (농진청, 채종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h style="width:20%;">작물별</th> <th style="width:20%;">단계별</th> <th style="width:10%;">자체</th> <th style="width:10%;">정기</th> <th style="width:40%;">검사기관</th> </tr> </table>		작물별	단계별	자체	정기	검사기관						
	작물별		단계별	자체	정기	검사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 rowspan="3">벼, 콩, 고구마, 땅콩, 참깨, 들깨, 팥, 녹두</td> <td>원원중</td> <td>1회</td> <td>1회</td> <td rowspan="3">종자원</td> </tr> <tr> <td>원 중</td> <td>1회</td> <td>1회</td> </tr> <tr> <td>보급중</td> <td>1회</td> <td>1회</td> </tr> </table>		벼, 콩, 고구마, 땅콩, 참깨, 들깨, 팥, 녹두	원원중	1회	1회	종자원	원 중	1회	1회	보급중	1회	1회
	벼, 콩, 고구마, 땅콩, 참깨, 들깨, 팥, 녹두			원원중	1회	1회		종자원					
				원 중	1회	1회							
보급중		1회	1회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 rowspan="2">봄감자</td> <td>원원중</td> <td>2회</td> <td>2회</td> <td rowspan="2">종자원</td> </tr> <tr> <td>원 중</td> <td>2회</td> <td>2회</td> </tr> </table>	봄감자	원원중	2회	2회	종자원	원 중	2회	2회					
봄감자		원원중	2회	2회		종자원							
	원 중	2회	2회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 rowspan="2">옥수수</td> <td>원원중</td> <td>2회</td> <td>2회</td> <td rowspan="2">종자원</td> </tr> <tr> <td>원 중</td> <td>2회</td> <td>2회</td> </tr> </table>	옥수수	원원중	2회	2회	종자원	원 중	2회	2회					
옥수수		원원중	2회	2회		종자원							
	원 중	2회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종기관은 정기검사 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포장 검사 결과를 정기검사 시 제출 다) 검사기준 및 시기는 종자산업법 『종자관리요강(농림 축산식품부고시)』 별표에 의함 라) 채종기관 및 채종농가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검사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종자원장에게 검사신청 마) 채종단계별, 작물별 검사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결과, 총괄표, 수검기관별 검사기간, 품종별 검사항목별 내역 첨부 ○ 포장조건, 특기사항, 문제점, 지적사항, 검사자 의견 등 보고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3) 종자검사	가) 종자검사 기관 - 원원종·원종·보급종 : 국립종자원 나) 검사기준 및 방법은 『종자관리요강』 및 『종자검사요령(종자원 고시)』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종자원예규)』에 의함 다) 채종기관 및 채종농가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검사 개시 3일 전까지 관할 종자원장에게 검사신청 라) 벼 원원종, 원종은 종자유통과정에서 품종진위, 이형주 발생 등 문제점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기관별(생산기관, 검사기관, 차 하급 인수기관)로 합성시료 보관 - 시료보관 기간 : 원원종 3년, 원종 2년, 보급종 1년	종자원 (채종 기관)														
4)채종단계별 지역 단위 합동진단	가) 채종단계별 종자생산포장 합동진단 대상 작물인 감자, 옥수수 이외의 벼, 콩에 대해서도 지역별 합동진단을 실시, 문제점의 조기파악대처 및 종자생산업무 추진에 반영 나) 지역별 합동진단 ○ 지역단위 관계전문가로 합동 진단반을 편성하여 추진 다) 추진방향 ○ 대상작물 : 벼, 콩 ○ 지역별 합동진단반 구성 <table border="1" data-bbox="306 1365 1089 1605"> <thead> <tr> <th>지 역</th> <th>주 관</th> <th>참여기관</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중부</td> <td>식량과학원</td> <td rowspan="3">도, 종자원 지원, 농업기술원, 원종생산기관, 품종육성자(기관)</td> <td>경기, 강원, 충북, 충남</td> </tr> <tr> <td>호남</td> <td>식량과학원</td> <td>전북, 전남</td> </tr> <tr> <td>영남</td> <td>남부작물부</td> <td>경북, 경남</td> </tr> </tbody> </table> ○ 시기 및 회수 : 작물별 출수기 또는 개화기에 1회	지 역	주 관	참여기관	비 고	중부	식량과학원	도, 종자원 지원, 농업기술원, 원종생산기관, 품종육성자(기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호남	식량과학원	전북, 전남	영남	남부작물부	경북, 경남	농진청 (종자원)
지 역	주 관	참여기관	비 고													
중부	식량과학원	도, 종자원 지원, 농업기술원, 원종생산기관, 품종육성자(기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호남	식량과학원		전북, 전남													
영남	남부작물부		경북, 경남													

VIII

보고 사항

항 목	보 고 명	시 한	보고기관
보고사항	주요농작물종자 원원종, 원종 종자생산 실적·계획 보고	실적 : 익년 1. 5. 계획 : 익년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기본식물) ○ 농업기술원 (원원종) ○ 농산물원종장 (원 종)
	주요농작물종자 보급종 공급 계획·실적 보고	계획 : 익년 1.31. 실적 : 익년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종자원 (보급종)

- 채종단계 :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 대상작물 : 벼, 콩, 옥수수, 감자,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 제반 보고는 국립종자원장에게 발송

(보고양식1)

주요농작물종자 채종단계별 생산(공급) 실적 보고

채종단계	작물명	품종명	생산(공급) 계획			생산(공급) 실적	비율	검사결과
			면적	종자량	목표량			
			a	kg	kg	kg	%	

* 원원종·원종은 생산계획 및 실적, 보급종은 공급계획 및 실적을 입력

* 검사결과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 사유 기재

(보고양식2)

작물별, 채종단계별 생산·공급계획 보고

<원원종 및 원종>

곡종별 품종별	생 산 계 획			해당도 종자확보 및 과부족			*확보방법 (대체희망품종)
	면 적	종자량	생산목표	확보량	소요량	과부족량	
	a	kg	kg	kg	kg	kg	

<보급종>

곡종별 품종별	생 산·공 급 계 획				해당도 종자확보 및 과부족			*확보방법 (대체희망품종)
	면 적	종자량	생산계획	공급계획	확보량	소요량	과부족량	
	ha	kg	톤	톤	kg	kg	kg	

- 주) 가. 종자 확보량은 생산단계의 상위단계 해당도 확보종자임
 나. 과부족량은 해당 도 상위단계 확보량 대 소요량과의 차이임
 다. 확보방법은 부족종자 확보계획으로 타도 잔량에 대한 전배 희망량이며, 타도에서 종자확보가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2~3개 품종을 희망 순서대로 명시
 라. 원원종, 원종계획은 도(농업기술원, 원종생산기관),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에서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마. 광역시(특별시 포함) 보급종 공급에 소요되는 원원종, 원종 생산은 광역시 승격 이전에 소속되었던 해당 도에서 생산
 - 서울·인천→경기, 세종·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